



유치원 교직원 배치 방안 연구

송신영·박창현·이혜민

연구보고 2025-09

유치원 교직원 배치 방안 연구

저 자

송신영, 박창현, 이해민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송 신 영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박 창 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 혜 민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5-09

유치원 교직원 배치 방안 연구

발행일	2025년 11월
발행인	황옥경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사)한국장애인문화컨텐츠협회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유아교육법」 제20조 제3항 개정으로 유치원 교직원의 배치 권한이 대통령령에서 관할청으로 변경되면서, 시도교육청의 자율성과 책임이 확대되었다. 이번 개정은 지역의 교육 여건과 유치원 운영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교직원 배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동시에 시도별 기준 마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지역 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대응하여 시도교육청의 교직원 배치 실태와 수요를 분석하고, 초·중등학교의 유관 제도와의 비교 검토 및 현장 심층면담 등을 통해 유치원 교직원 배치의 표준안과 추가배치교사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수업 결손으로 인한 유아의 학습권 침해,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구조적 어려움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시도교육청의 배치기준 수립에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되고, 나아가 교원의 전문성과 유아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귀중한 의견과 경험을 나누어 주신 시도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자, 유치원 원감·교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 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25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황 옥 경



목차

요약 1

I.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 내용 및 범위	15
3. 연구 방법	16
4. 선행연구	20
II. 유치원 교직원 배치 법령 및 현황	25
1. 유치원 교직원 배치 법령	27
2. 유치원 교직원 배치 현황	34
3. 시사점	43
III. 초·중등학교 교원 배치기준 및 비담임교사 제도	47
1. 초등학교 교원 배치기준: 서울, 경기	49
2. 교과전담교사	53
3. 순회교사	55
4. 시사점	60
IV. 유치원 교직원 배치 사례 및 수요 분석	63
1. 시도교육청 의견조사	65
2. 유치원 현장 요구	71
3. 추가배치교사(전담교사) 운영 사례	79
4. 시사점	89
V. 유치원 교직원 배치 방안	91
1. 법 개정	93
2. 유치원 교직원 배치기준 표준안	94

3. 전담교사제 운영(안)	99
4. 제도 안착을 위한 정책과제	100

참고문헌	103
-------------------	------------

부록	107
-----------------	------------

부록 1. 심층면담 질문지	107
부록 2. 유치원 교직원 배치기준 표준안	119



표 목차

〈표 I-3-1〉 심층면담 참석자 특성	18
〈표 I-3-2〉 심층면담 내용	19
〈표 I-4-1〉 국공립교사노조 설문조사 주요 결과	23
〈표 II-1-1〉 유아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구분) 개정 전후 비교	28
〈표 II-1-2〉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28
〈표 II-1-3〉 초·중등교육법: 교직원에 관한 조항	29
〈표 II-1-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직원 배치에 관한 조항	30
〈표 II-1-5〉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겸임 규정	30
〈표 II-1-6〉 학교급식법 제7조 및 부칙	31
〈표 II-1-7〉 학교보건법 및 시행령: 보건교사 배치에 관한 조항	32
〈표 II-1-8〉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자격 조항	33
〈표 II-1-9〉 유아교육법 시행령: 직원의 배치기준	34
〈표 II-1-10〉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겸임 규정	34
〈표 II-2-1〉 원감 배치기준	35
〈표 II-2-2〉 보직교사 배치기준	37
〈표 II-2-3〉 방과후담당 교사 배치기준	39
〈표 II-2-4〉 전국 유아교육진흥원 인력 현황	41
〈표 II-2-5〉 전국 유치원 영양(교)사 배치 현황	42
〈표 II-2-6〉 전국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현황	42
〈표 II-2-7〉 각 지역별 행정직원 배치규모별 학급 수	43
〈표 III-1-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 초중등 학교급별 교원 배치기준	50
〈표 III-1-2〉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 교원 배치기준	51
〈표 III-2-1〉 교과목별 초등학교 교원수(2024)	54
〈표 III-3-1〉 교육공무원법 제18조(겸임)	56
〈표 III-3-2〉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 2(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56
〈표 III-3-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2(겸임)	56
〈표 III-3-4〉 전국 중등학교 겸임(순회)교사 현황: 2021~2023	58
〈표 IV-1-1〉 추가배치교사 수요조사 결과: 전담교사	66
〈표 IV-1-2〉 추가배치교사 수요조사 결과: 순회교사	68
〈표 IV-1-3〉 추가배치교사 수요조사 결과: 기타	69

〈표 IV-1-4〉 추가배치교사 수요조사 결과: 유아교육진흥원 교사	69
〈표 IV-1-5〉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70
〈표 IV-1-6〉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9조, 별표 1	70
〈표 IV-3-1〉 추가배치교사(전담교사) 운영 개요	79
〈표 V-1-1〉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93



그림 목차

[그림 I-3-1] 1~3차 17개 시도교육청 협의회	17
[그림 III-3-1] 경남 관내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초등 순회보결전담교사 신청 현황 화면1	59
[그림 III-3-2] 경남 관내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초등 순회보결전담교사 신청 현황 화면2	60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유아교육법」 제20조 제3항 개정(25.9.19. 시행)에 따라, 국공립유치원 교직원의 배치 권한¹⁾이 기존 대통령령에서 지도·감독 기관(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됨.
 - 이번 개정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별 여건,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에 대응하여 관할청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취지로 하고 있음.
 -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미발령 교원 발생,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로 인한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유치원 교사의 수업 외 행정업무 과중 문제, 정서·행동 위기 아동 증가 등으로 인해 추가 교사 배치에 대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지역별 편차가 있더라도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원아 수 감소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로 인한 운영 형태 다양화는 교원의 수급과 배치 전반에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 이번 개정으로 1학급 1담임 체제에서 벗어나 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교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인구소멸지역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생겨나는 소인수 학급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교사 등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도 있음.
 - 다만 도입 초기에는 시도교육청 간 인력 운영 방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간 유아교육의 질적 차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유아교육법」 개정 후속조치로 시행될 시도교육청 유치원 교직원 배치기준 마련에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을 제시하고, 수요가 높은 추가배치교사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안을 제안하고자 함.

1)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배치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유치원에 관련된 내용으로, 본 연구는 국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함. 직원 역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행정직원에 한함.

나. 연구 내용 및 범위

- 공립유치원 교원과 직원 배치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각 시도교육청 교직원 배치기준 현황을 조사하여 비교, 검토함.
-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초등학교 교원 배치기준과 교과전담교사, 순회교사 등 유치원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제도를 분석하여 유치원 교원 배치기준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함.
- 시도교육청 협의회 및 공립유치원 원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통해 실제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교사 수요를 파악함.
 - 추가배치교사가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여 표준안 마련에 참고하고, 전면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함.
 -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도교육청에서 참고할 수 있는 유치원 교원 배치기준 표준(안)을 마련함.

다. 연구 방법

1) 문헌 및 자료 분석

- 유치원 교원 배치 법령 및 시도교육청별 배치기준과 규정, 초등학교의 교원 배치기준, 그리고 비담임교사 운영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함.

2) 시도교육청 담당자 의견조사 및 협의회

- 각 시도교육청별 추가배치 현황 및 수요, 그리고 지원 요구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17개 시도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3차례에 걸친 의견조사와 3차례의 협의회를 개최함.

3) 심층면담

- 유치원 교직원 배치에 관한 현황 및 요구 조사와 위해 원감과 교사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심층면담을 실시함.

4)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와 연구 수행 방향 및 전반적 과정에 대하여 협의하고, 지역공무원 의견조사지 등을 검토, 논의함.
- 국내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유아의 발달 지원 측면에서 교원 배치기준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함.

2. 유치원 교직원 배치 법령 및 현황

가. 유치원 교직원 배치 법령

1) 교원

□ 「유아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직원 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모두 효력이 상실됨.

2) 영양(교)사

□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직원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음. 급식을 제공하는 모든 국공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함.

3) 보건교사 및 보건인력

□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치원에 직원으로 계약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으며, 「학교보건법」에서는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4) 행정직원

□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행정직원을 둘 수 있으며, 시행령에서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유치원에 배치되는 직원의 기준에 대해 지방공무원 정원 배치기준을 정해 시행하고 있음.
-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에 발령된 직원이 병설유치원의 업무를 겸임하

는 형태로 운영됨.

나. 유치원 교직원 배치 현황

1) 교원

- 원감: 현행 「유아교육법」에서는 2학급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현황을 보면 3학급 이상 모든 유치원에 원감을 배치하는 지역은 4개 지역에 불과함.
 - 배치기준 개선 방향과 관련한 시도교육청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원감의 경우 대체로 4학급 이상 유치원에 배치하는 것으로 수렴함.
- 보직교사: 유치원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유치원 업무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는데, 보직교사 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고 있어 배치기준은 교육청별로 상이함.
 - 보직교사는 원장의 업무분장에 따라 교무부장, 연구부장 등의 부장교사로 지정하며, 주로 담임교사 중에 맡음. 주당 수업시간은 대체로 담임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정하고 있음.
- 방과후 담당 교사: 지역에 따라 배치 여부 및 규모가 상이한데, 자료 공개를 허락한 16개 시도교육청을 기준으로 방과후과정 담당으로 강사나 공무직이 아닌 교원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11개 시도교육청이며, 기간제교원을 배치한 1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지역은 정규교원을 방과후과정 담당으로 배정하고 있음.
- 추가배치교사(비담임교사): 17개 시도교육청 중 9개 지역이 기간제교원을 포함하여 추가배치교사인 비담임교사를 배치하고 있음. 이 중 정규교원을 비담임교사로 하는 곳은 5개 지역이며 나머지 4개 지역은 기간제교원을 활용 중에 있음.
 - 추가배치교사는 업무 성격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선 단위활동 또는 특색수업을 담당하며, 보결수업 지원과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임. 명칭은 업무전담(지원)교사, 수업지원교사, 지원교사 등 시도교육청 별로 다르게 명명하고 있음.

2) 영양(교)사, 보건교사

- 영양교사는 「학교급식법」에 의해 배치하고 있으나, 영양교사의 유치원 배치에 대한 상세법령이 만들어지기 이전 이미 영양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부칙에 따라 영양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보고 있음. 이에 따라 국공립유치원은 약 91.7%에 관련 인력이 배치되어 있음.
- 「학교보건법」에서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배치율은 단설유치원 63.8%, 병설유치원 96.6%임.

3) 직원

- 단설유치원은 대체로 학급 수를 기준으로 2~4명까지 배치하며, 교무행정과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함. 병설유치원은 독립된 행정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초등학교에 배치된 행정직원이 유치원 업무를 겸임하는 형태임.

3. 초·중등학교 교원 배치기준 및 비담임교사 제도

가. 초등학교 교원 배치기준: 서울, 경기

- 교장, 교감, 교사 등 구체적 배치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교장과 교감에 관해서는 표현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법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 교장은 학교당 1명, 교감은 42학급까지는 1명, 43학급부터는 2명, 5학급 이하 미배치 허용에 대해서는 동일함. 다만 경기도교육청은 학기 중 학급 증가, 교감의 학기 중 전보, 통합학교나 분교장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정하고 있음.
- 보직교사에 대한 기준은 차이가 있음.
 - 서울은 20학급 이하에 10명 이내, 21~26학급 11명 이내, 27~32학급 12명 이내, 33학급 이상 13명 이내로 하여 상한을 정해두고 각 학교의 자율적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경기는 11학급 이하 3명, 12~17학급 5명, 18~23학급 7명, 30~35학급 10명, 36학급 이상 12명, 그리고 5학급 이하의 분교장에 1명, 43학급 이상 학교 중 복수교감 미배치교에 1명 증치로, 학교 규모가 다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배치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음.

나. 교과전담교사

- 초등학교 교과전담 교원제는 교원들의 과다한 수업부담을 경감시키고 교과지도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있음.
 - 전담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은 각 교육청별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 방침 또한 시도별로 다름.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사례를 살펴보면 교과전담이 일정 부분 교사의 업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동시에 수업 전문성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다. 순회교사

- 순회교사는 보통 특정 학교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소속을 두고 2개교 이상의 학교를 순회 또는 겸임하며 담당교과목을 지도하거나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의미함.
 - 순회교사는 주로 교과별 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소규모 학교나 학생들의 이수시간 수가 적은 예체능 및 희소교과목에 대한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최근 순회교사 제도는 학급의 감소에 따라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에 따라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일부 지역교육청에서는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순회교사가 인근 초등학교의 보결수업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4. 유치원 교직원 배치 사례 및 수요 분석

가. 시도교육청 의견조사

- 전국 시도교육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사 외에 향후 배치를 원하는 지역 실정에 맞는 비담임교사 유형에 대해 조사함. 조사 결과 다음의 형태의 교사들이 제시됨.
 - 1) 전담교사: 일부 수업 및 업무 담당
- 전담교사에 대한 수요는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시되었음. 명칭이나 세부 운

영 기준은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수업 일부와 특정 업무를 전담하는 형태임.

- 일반 교사의 주당 수업시간은 누리과정 운영시간인 1일 4~5시간으로 환산하여 주당 20~25시간으로 보는데, 전담교사의 주당 수업시간으로 절반가량인 10~12시간부터 많게는 동일한 양의 수업시간을 제시하고 있음.

2) 보결 지원(순회교사)

- 순회교사에 대한 수요도 많이 언급됨.

- 특히 장기재직휴가가 시행되고, 교사의 휴가 사용에 대한 요구가 높고 실제 사용도 증가함에 따라 보결에 대한 지원 요구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지역별 유치원 분포 정도가 달라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지역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배치할 필요가 있음.

3) 정책사업 담당

- 한국어학급을 운영하는 다문화교육정책학교에 대한 교사 배치 수요도 나타남.

- 이러한 교사는 일부 지역에서 이미 배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이주배경 유아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유아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이나 수업 지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4) 유아교육진흥원 교사

- 지역마다 유아교육진흥원이 활성화되고 각종 체험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진흥원 방문 유아를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에 대한 수요가 있음.

- 다만, 유아교육진흥원은 경력 인정 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력 불인정 문제는 향후 전문인력 확보와 배치 운영에도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 단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한계점을 고려하여 유아교육진흥원 인력을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나. 유치원 현장 요구

- 공립 단설, 병설유치원 원감과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직하고 있는 유치원에서의 교직원 배치와 관련하여 겪는 어려움과 개선

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리함.

- 교원의 업무 과중에 관한 어려움이 드러났으며(특히 보직교사), 담임교사와 함께 보직교사를 맡는 경우 근무시간 내 업무 처리가 어려워 찾은 야근과 격무에 시달리며, 수업 준비에 차질을 겪고 있음.
- 변화된 근무문화로 유치원 교사의 병가, 연차 사용이 보장됨에 따라 유치원 현장은 찾은 수업 결손 상황이 일어나고 있음.
- 소규모 병설유치원에서는 담임교사가 사실상 모든 역할을 혼자 담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두드러짐.
- 병설유치원의 경우 학교 행정실이 유치원 업무를 본래 업무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협조가 원활하지 않고, 교사가 각종 행정 절차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토로함.

다. 추가배치교사(전담교사) 운영 사례

- A, B, C 교육청은 추가배치교사 중 하나인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음.
 - A교육청은 별도의 명칭이나 업무를 정하지 않고 교사를 추가배치하여 유치원 사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B교육청은 추가배치(수업전담)교사라는 이름으로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사를 배치하고 있음. C교육청은 업무전담(지원)교사라는 명칭으로 특색수업과 업무, 그리고 보결수업을 지원하는 교원을 배치하고 있음.
- 사례분석 결과 전담교사는 업무부담 경감, 교육의 질 향상, 보결수업 안정성 확보 및 교원의 휴가 사용 가능성 확대에 따른 만족도 제고, 학부모 신뢰도 및 만족도 상승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음.
- 현장의 혼선과 유치원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명칭과 역할, 주당 수업시간 등 일정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5. 유치원 교직원 배치 방안

가. 법 개정

- 「유아교육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함.

- 유치원에 두는 교원의 종류와 역할을 제시하고 원감 배치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외에 그 외의 교원에 대한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삭제함.

나. 유치원 교직원 배치기준 표준안

- 이상의 연구을 바탕으로 배치기준 표준안을 제시하였음. 배치기준 표준안은 지역교육청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비담임교사 유형을 폭넓게 제안하되, 세부 배치기준은 보수적으로 설정하였으며, 대강화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내용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음.
- 각 시도교육청 교직원 정원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 가능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현행 법령과 현황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수요를 반영하여 전담교사, 순회교사, 유아교육진흥원 교사를 제시하였음.

다. 전담교사제 운영(안)

- 배치기준 표준안은 각 시도교육청의 지역 여건에 따른 배치 필요성을 최대한 인정하고자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함.

- | |
|-------------------------------------------------------------------------------------------------------------------------------------------------------------------------------------------------------------------------------------------------------------------------------------------------------------------------------------------------------------------------------------------------------------------------------------------------------------------------------------------------------------------------------------------------------|
| 1) 명칭: 전담교사
2) 역할: 일정 수업과 행정업무를 담당함.
3) <u>주당 수업시간</u> : 담임교사의 1/2 수준
4) 업무 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은 학급 수와 교원 수를 고려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장하며, 전담교사 배치를 통해 담임교사의 실질적 업무 경감을 도모한다. 5) 배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학급 이상~8학급 이하: 1명 - 9학급 이상~16학급 이하: 2명 - 17학급 이상: 3명 6)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역별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전담교사 역할에 인근 유치원 수업 지원 포함 시 배치기준 세분화 및 확대 필요 - 우선 배치조건: 유아 수, 학급 수(총족률 고려), 혼합연령, 농산어촌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조정 |
|-------------------------------------------------------------------------------------------------------------------------------------------------------------------------------------------------------------------------------------------------------------------------------------------------------------------------------------------------------------------------------------------------------------------------------------------------------------------------------------------------------------------------------------------------------|

라. 제도 안착을 위한 정책 과제

□ 본 연구는 2025년 9월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맞춰 2026년도부터 교직원 배치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시도교육청이 참고할 수 있는 유치원 교직원 배치기준 표준안 마련을 중심으로 한 연구임.

- 본 연구에서는 공립유치원 교원과 직원 배치에 관한 배치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전담교사, 순회교사, 유아교육진흥원 교사 등 새로운 유형의 추가배치교사를 제안하였으며 명칭과 역할을 제시함.
- 제시한 표준안은 정원 내 적용을 전제로 하여, 각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전담교사, 순회교사, 유아교육진흥원 교사 등 새로운 교사 도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다루지 않았음.

□ 중앙정부

- 추가배치교사 효과 검증 및 정원 확보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
- 유아교육진흥원 교사 경력 인정 법령 개정

□ 시도교육청

- 추가배치교사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정 및 제도 마련
- 협의체 구성 및 정기적 운영을 통해 제도 보완 및 조정
- 단위유치원 지원 및 관리

I

서 론

-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02 연구 내용 및 범위
- 03 연구 방법
- 04 선행연구

I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교육법」 제20조 제3항 개정(2025. 9. 19. 시행)에 따라, 국공립유치원 교직원의 배치 권한²⁾이 기존 대통령령에서 관할청(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었다. 이번 개정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고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에 맞게 관할청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취지로 하고 있다. 기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직원 배치에 관한 법령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이제는 지도·감독 기관이 관할 유치원의 교직원 배치 기준을 각각 마련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백승아 의원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미발령 교원 발생, 그리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로 인한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 발생을 주요 배경으로 제시하였다(백승아 의원 등 12인, 2024. 11. 8.). 유치원 교사 미발령 교원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발표되고 있지 않지만, 매해 줄어드는 학급 수를 바탕으로 유추컨대, 상당수의 미발령 교원이 발생함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 2025. 3. 1.자 유치원 신규교사 발령 현황에 따르면, 일반전형 합격자 80명 중 55명만이 발령되어(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2025. 9. 28., 인출)³⁾ 약 31%가 미발령 상태로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유치원 교사의 수업 외 행정업무 과중 문제(김근진·박창현, 2017; 김주영·김정희, 2023), 정서·행동 위기 아동 증가 역시 교사의 지도 부담을 가중시키며 추가 배치 교사 수요를 뒷받침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무학사전담교사(이재정 의원 등 10인, 2023. 8. 9.)나 전문상담교사(고민정 의원 등 11인, 2024. 12. 16.) 배치를 위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시도교육청의 교육계획

2)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배치에 관련 사항은 국공립유치원에 관련된 내용으로, 본 연구는 국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함. 직원 역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행정직원에 한함.

3)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뉴스/소식-인사정보, <https://www.goe.go.kr/goe/na/ntt/selectNttInfo.do?nttSn=1056201&mi=10518>(2025. 9. 28., 인출)

에 따라 특정 영역의 활동을 전담하는 교사 배치 수요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에서도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방안으로 소규모 유치원 등에서 보결수업을 담당할 대체교사, 수업지원교사, 순회교사⁴⁾ 제도의 개선이 주요 과제로 제시된 것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교육부, 2023. 4. 10).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원아 수 감소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로 인한 운영 형태 다양화는 교원의 수급과 배치 전반에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일부 시도교육청은 명칭은 다르지만 학급을 담당하지 않고 일정 수업과 업무를 전담하는 형태의 추가배치교사를 배치해 운영하는 등 자율적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비담임교사 제도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의미가 있다.

한편 「학교급식법」과 「학교보건법」 상 공립유치원과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영양교사와 보건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상 교원 자격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제도적 한계와 이해 관계 충돌로 인해 원활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역별로 정규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배치한 지역이 있는 반면, 일부 지역은 영양사, 건강실무사 등 공무직 비율이 매우 높게 차지하는 등 지역간 차이가 크다. 이번 연구에서는 각 지역교육 청별 영양(교)사, 보건교사 및 보건인력 배치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현황을 반영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개정은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각 시도교육청이 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시도 교육청의 교육계획과 지역여건을 반영한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교원 배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데에서 그 의미가 크다. 1학급 1담임 체제에서 벗어나 학급을 담당하지 않고 유치원에 필요한 새로운 유형의 교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인구소멸지역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생겨나는 소인수 학급을 지원할 수 있는 교사 등 교육 현장의 어려움 해소에도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양질의 유아교육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에서 제시한 대체교사, 수업지원교사, 순회교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대체교사: 현장교사 휴가 등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단기간 파견하는 교사
- 수업지원교사: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누리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교사
- 순회교사: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의 특수유아를 담당하여 방문하는 교사

다만 도입 초기에는 시도교육청 간 인력 운영 방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간 유아교육의 질적 차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한 교사 유형을 제시하고 배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과 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17개 시도교육청의 수요 분석을 토대로 교직원 배치 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를 도출하여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시도교육청 유치원 교직원 배치기준 마련에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을 제시하고, 수요가 높은 추가배치교사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립유치원 교원과 직원 배치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각 시도교육청 교직원 배치기준 현황을 조사하여 비교, 검토한다.

둘째, 초등학교 교원 배치기준과 교과전담교사, 순회교사 등 유치원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제도를 분석하여 유치원 교원 배치기준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시도교육청 협의회 및 공립유치원 원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통해 실제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교사 수요를 파악하고, 추가배치교사가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여 표준안에 포함할 추가배치교사 유형과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한다.

넷째,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도교육청에서 참고할 수 있는 유치원 교원 배치기준 표준(안)을 마련한다. 공립유치원에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 교사 유형과 이들의 명칭과 역할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연구로,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였다. 해당 법령이 교직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다룸에 따라, 연구 제목에서 유치원 교직원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교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었다. 행정직원에 관한 사항은 2013년 이후부터 관할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혼동을 반영하여 제시하는 것에 한정하여 진행함을 밝힌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 및 자료 분석

유치원 교원 배치 관련 자료와 비담임교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유치원 교원 배치 법령 및 시도교육청별 배치기준과 규정, 초등학교의 교원 배치기준, 그리고 비담임교사 운영 자료를 수집하여 유아교육 분야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 시도교육청 담당자 의견조사 및 협의회

각 시도교육청별 추가배치 현황 및 수요, 그리고 지원 요구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17개 시도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친 의견조사와 2차례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1) 1차 협의회

- 안건: 연구 소개 및 일정 공유, 향후 협조 요청
- 일시: 2025. 9. 24.(수) 14:00 ~ 16:00
- 장소: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스카이홀
- 참석자: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진 2인,
17개 시도교육청 공립유치원 교원인사 담당자 27명(교원인사과/
유아교육정책과 등)

2) 1차 의견조사

- 기간: 2025. 9. 30. ~ 10. 13.
- 내용: 공립유치원 교직원 배치현황 및 추가 배치 수요 조사
- 결과: 17개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 완료

3) 2차 의견조사

- 기간: 2025. 11. 4. ~ 11. 10.
- 내용: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 결과: 17개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 완료

4) 2차 협의회

- 안건: 1차 수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원감, 보직교사 배치기준 제시에 관한 사항, 전담교사 명칭
- 일시: 2025. 11. 20.(목) 14:00 ~ 16:00
- 장소: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스카이홀
- 참석자: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진 2인, 17개 시도교육청 공립유치원 교원인사 담당자 34명(교원인사과/유아교육정책과 등)

5) 3차 의견조사 및 최종안 마련

- 기간: 2025. 11. 26. ~
- 내용: 2차 수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결과: 17개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 완료 및 최종안 마련⁵⁾

[그림 I-3-1] 1~3차 17개 시도교육청 협의회



5) 2차 협의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3차 의견조사를 실시(11. 26.~12. 9)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하였으며, 후속 지원으로 3차 협의회를 통해 이를 안내 및 배포하였음(12. 16.).

다. 심층면담

유치원 교직원 배치에 관한 현황 및 요구 조사를 위해 원감과 교사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추가배치교사에 대한 수요 파악을 위해 원감과 교사를 대상으로 교직원 배치로 인한 어려움과 필요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추가배치교사를 이미 배치하여 운영 중인 3개 지역의 유치원 원감과 해당 교사를 대상으로 제도 상세사항 파악과 장단점, 그리고 전면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참석자 및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3-1〉 심층면담 참석자 특성

구분	기관유형	학급 수	직위	비고
원감	1 공립병설	4	원감	
	2 공립단설	6	원감	
	3 공립단설	5	원감	
	4 공립단설	10	원감	추가배치(수업전담)교사
	5 공립단설	7	원감	추가배치(수업전담)교사
	6 공립단설	11	원감	업무전담(지원)교사
	7 공립단설	12	원감	업무전담(지원)교사
	8 공립단설	7	원감	추가배치교사
	9 공립병설	8	원감	추가배치교사
교사	1 공립단설	5	교무부장	방과후학교 담당
	2 공립단설	6	교무부장	
	3 공립병설	1	담임교사	
	4 공립병설	1	담임교사	
	5 공립병설	4	교무부장	담임교사
	6 공립병설	2	수석교사	
	7 공립병설	3	담임교사	
	8 공립단설	10	교무부장	추가배치(수업전담)교사
	9 공립단설	7	교무부장	추가배치(수업전담)교사
	10 공립단설	11	-	업무전담(지원)교사
	11 공립단설	12	교무부장	업무전담(지원)교사
	12 공립단설	7	교무부장	추가배치교사

〈표 I-3-2〉 심층면담 내용

구분	대상별 조사내용	
유치원 현황	원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특성: 유형(공립 단설/병설), 학급 수, 현원, 교원 수(보직교사/담임교사/비담임교사), 영양(교)사(영양교사/기간제 영양교사/영양사/미배치), 보건 인력(보건교사/기간제 보건교사/간호(조무)사, 미배치), 유치원 소재지 추가 자료수집: 정원, 유치원 교직원 현황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특성: 유형(공립 단설/병설), 학급 수, 현원, 유치원 소재지 추가 자료수집: 정원, 유치원 교직원 현황
현행 배치 인식	원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직원 규모 및 업무량 적절성 보직교사
추가배치교사/ 전담교사 배치 운영 사례	원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배치교사/전담(지원)교사 역할 업무 분장 방식/다른 교사와의 관계 추가배치교사/업무전담교사로 인한 변화(긍정적인 점, 어려움) 학부모 만족도 개선 방향(전면 확대, 축소 등)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당 업무, 수업, 비중 해당 업무 담당 경유(자원/근무경력에 따른 순서 등) 업무 분장 추가배치교사/업무전담교사로 인한 변화(긍정적인 점, 어려움)
유아교육 질 향상을 위한 추가배치교사 필요성	원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교사 배치기준(기관규모, 지역적 특성 등) 최소 수업시수 명칭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교사 배치기준(기관규모, 지역적 특성 등) (교사로서의) 최소 수업시수 명칭
영양(교)사/ 보건 인력	원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양(교)사 보건 인력 배치 현황 보건교사·영양교사 배치(또는 미배치) 관련 현장의 어려움 현행 제도기준과 실제 운영 간 괴리 유치원 규모 또는 유형(단설·병설 등)에 따른 보건교사·영양교사 배치기준 정규 교원(보건·영양교사) 배치 어려운 경우, 현실적인 대안(순회, 공동 배치, 외부 지원 등)
교원 배치 표준안 반영 희망 현장 의견 및 제안점	원감,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 배치 표준안에 반영 희망 현장 의견 추가로 강조하고 싶은 제안 또는 사례
응답자 특성	원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답자 특성: 연령, 성별, 직위(원장/원감), 총 경력(총 교육 경력, 현 유치원 경력)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답자 특성: 연령, 성별, 직위(보직교사(부장교사), 담임교사(담당학급), 비담임교사), 담임교사총 경력(총 교육 경력, 현 유치원 경력)

라.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와 연구 수행 방향 및 전반적 과정에 대하여 협의하고, 지역교육청 담당자 의견조사지 등을 검토, 논의하였다. 또한 국내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유아의 발달 지원 측면에서 교원 배치기준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4. 선행연구

가. 공립유치원 교사의 행정업무 실태와 부담

김주영·김정희(2023)는 공립유치원 교사 2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유치원 교사, 특히 보직교사는 자신의 교무행정업무량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김주영·김정희, 2023: 95), 공립유치원 교사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원인은 행정업무가 과중한 것이 가장 높았다(김주영·김정희, 2023: 96). 해당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공립유치원 교사가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는 교무행정지원사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전임 원장·원감의 배치와 상관없이 모든 유치원에 교무행정지원사가 전면적으로 배치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주영·김정희, 2023: 96).

안혜정·이승연(2018)의 연구에서는 공사립유치원 교사 2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사립 교사들에 비해 수업준비를 많이 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 행정업무와 개인담당업무가 과다하다는 내용을 꼽았다(안혜정·이승연, 2018: 18). 또한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인력지원이 필요한 업무로 사무관련과 교수학습준비를 꼽았는데, 교사의 업무를 보조할 인력이 부족하고, 다양하고 동시에 대응·처리하는 업무가 과다하여 효율적으로 업무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안혜정·이승연, 2018: 18). 때문에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정책적인 지원으로 행정업무경감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유아지도 및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업무분담 인력 확충을 가장 원하고 있었다(안혜정·이승연, 2018: 18-19).

제주 지역 초·중등학교 병설 공립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박은정·이인희·김승희(2017)의 연구에서는 유치원 교사의 행정업무를 유아학비 지원 업무(7종), 방과후과정 업무(6종), 정보공시 업무(1종), 자료집계 업무(1종), 유치원 시설관리 업무(7종)의 총 22항목으로 나누었는데(박은정 외, 2017: 431),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이 업무들이 본인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부담감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은정 외, 2017: 442). 박은정 외(2017)는 이러한 업무 적합성과 부담감을 고려하여 수업 외 행정업무 중 방과후과정과 유아학비 지원, 유치원 시설관리 업무에 행정업무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박은정 외, 2017: 442).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공립유치원 교사의 업무환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교사들이 본래 맡아야 할 수업·놀이·관찰 등 교육활동 보다는 행정업무·비수업담당업무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있다. 둘째, 설립유형과 관계없이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수업준비·교육활동 시간 확보에 제약을 느끼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과다한 행정업무와 인력지원 부족이 지목되었다. 셋째, 이러한 부담은 단순히 개인 교사의 업무량 증가에 그치지 않고 교사의 스트레스 수준, 업무 몰입도, 유아교육의 질적 여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립유치원 교사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부담 경감, 인력 보조체계 마련, 업무분담 구조 개선 등이 정책적·제도적으로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

나. 교사 배치 및 인력 확충

현 단계에서 교사의 배치 및 인력 운영체계는 유아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저출산·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단순히 교원 수를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급당 유아 수, 교원 1인당 유아 수와 같은 기준 설정부터 복수담당제·전담교사 배치, 보조 및 행정 인력 확대에 이르기까지 인력배치 설계의 구조적 개선이 요구된다.

먼저, 김왕준·신지영·김민규(2024)의 연구에서는 국내외 유치원 교사 배치 현황과 법령·정책을 분석하고, 경기도 유치원 교사 배치 실태 조사 및 전문가 협의회·FGI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급당 유아 수 감축, 교원 1인당 유아 수 기준 설정과 함께 교원 추가 배치 방안으로 방과후과정 정규교원

확대, 수업전담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 복수담임제 도입, 시간선택제 교사 확대 등을 주요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특히 교사의 행정업무 분담 및 보조인력 확대를 통해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교육활동 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김왕준 외, 2024).

다음으로, 김근진과 박창현(2017)은 면담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연구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국공립유치원의 행정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 방안으로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3학급 이상에는 초등학교 교감 겸임 대신 전담 원감을 배치하고 교무행정지원사를 확대,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에 대한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지급 등을 제안하였다. 단설유치원에 대해서는 보건인력 배치와 초등학교 수준의 행정지원 인력 배치, 현장학습 안전관리 담당 인력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단·병설유치원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는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급식실 및 영양사, 조리원 지원 확대, 안전관리 인력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최근 현장자료에서도 교사들이 인력배치 개선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가 구체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국공립교사노조가 2025년 4월 시작해 2개월간 실시한 설문조사(응답자 2,358명) 결과(표 I-4-1 참조)에 따르면 전담교사 배치에 대해 ‘매우 필요’가 91.5%에 달했으며, 배치 시 기대효과로 ‘행정업무 경감’ 80.5%, ‘교육 질 향상’ 75.5%, ‘복무 융통성 향상’ 62.1%, ‘수업 부담 경감’ 59.0%, ‘과원 문제 해소’ 52.8% 등이 있었다. 전담교사의 역할로는 ‘행정업무 분담’ 82.4%, ‘특정활동 지원’ 75.5%, ‘보결 지원’ 70.7%가 거론됐고, 응답자의 88.5%가 지원 의향을 보였으며 배치 방식으로는 개별 유치원 소속이 48.2%로 가장 높았다(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2025. 9). 이러한 결과는 현장 교사들이 인력배치 변화가 교사의 실제 업무부담과 교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배치체계가 실제 운영으로 이어지는 데엔 여전히 과제가 존재한다. 연구 및 정책보고서들은 특히 소규모 유치원이나 농·산·어촌 지역 등 기관 여건이 특수한 경우에 맞춤형 인력배치기준이 충분히 설계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김왕준 외, 2024). 즉, 설립유형(국공립·사립·병설·단설) 및 지역 특성(도시·농어촌)별로 차별화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을 때 실행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유치원 인력배치정책은 배치기준 설정-역할정의-업무보조체계-지원환경 확보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표 I-4-1〉 국공립교사노조 설문조사 주요 결과

문항	주요 결과
전담교사 배치 필요성	매우 필요 91.5%, 필요 7.5%
배치 시 기대효과	행정업무 경감 80.5% > 교육 질 향상 75.5% > 복무 융통성 62.1% > 수업 부담 경감 59.0% > 과원 문제 해소 52.8%
전담교사 역할	행정업무 분담 82.4% > 특정활동 지원 75.5% > 보결 지원 70.7%
지원 의향	긍정 88.5%
배치 방식	개별 유치원 소속 48.2% > 소규모 병설 순회 26.0% > 단설 순회 15.0% > 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소속 순회 8.2%

자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2025. 9). 유치원 추가배치교사(전담교사) 기준 마련 관련 전국 유치원 현장교사 인식조사 결과.

다. 영양(교)사, 보건교사 등 전문인력

유아교육기관에 영양교사 및 보건교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유아의 건강과 안전, 영양관리 수준을 제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행정·비수업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전략적 과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이 존재하면서 이와 관련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배치되고 운영되는 방식에 있어 실행과정에 여러 구조적 제약이 발견되고 있다.

첫째, 설립유형별 영양교사의 직무 중요도 및 수행도 간 격차가 실증적으로 확인된다. 백선영 외(2020)의 연구에서는 설립유형(공립단설·공립병설·사립) 유치원 영양(교)사 152명을 대상으로 직무 중요도와 실제 수행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모든 설립유형에 걸쳐 직무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되었음에도 수행도는 설립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특히 ‘유아 대상 영양·식생활 교육’ 항목에서는 수행도가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백선영 외, 2020: 282). 이러한 결과는 영양교사 배치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설립유형, 조직 여건, 인력 역할·시간 여건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영양인력 배치 여부가 유아교육기관의 급식 및 영양관리 질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데이터가 있다. 충남지역 유치원의 영양사 배치 유무에 따른 급식실태와 학부모의 급식만족도 비교(이경희·김명희·최미경, 2013)에서는 충남지역 유치원 42개원을 대상으로 영양사 배치 유무를 비교한 결과, 영양사 배치 유치원이 조리실·급식실 완비율이 높았고, 식단 작성자를 영양사가 담당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이경희 외, 2013: 280). 이는 인력배치가 단순히 인원 확보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급식·영양관리의 질적 여건 개선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셋째, 보건교사 배치 측면에서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실행에서의 간극이 존재한다. 법제처(2019. 1. 28) 유권해석에서는 유치원은 「학교보건법」 제 15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보건교사 배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다(법제처,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사에서는 유치원 단계에서 보건전담인력 배치율이 매우 낮다는 현장 보도가 존재한다(전북미래교육신문, 2025. 10. 21일자 기사). 이처럼 제도적 가능성과 실질적 실행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실행 간 괴리가 나타나는 이유는 다차원적이다. 기관 규모·원아 수·급식 제공 여부·교사의 행정·비수업 업무량 등 현실적 여건이 정책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기관의 설립유형(국공립·사립·병설·단설) 및 지역 특성(도시·농어촌)별 맞춤형 배치기준이 명확히 설계되어 있지 않아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구조적 문제도 확인된다(신유리·경민숙·함선옥, 2022).

II

유치원 교직원 배치 법령 및 현황

- 01 유치원 교직원 배치 법령
- 02 유치원 교직원 배치 현황
- 03 시사점

II. 유치원 교직원 배치 법령 및 현황

II장에서는 유치원 내 교직원 배치에 관한 법령과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교직원 배치 관련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직원 배치 현황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표준안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 및 선행되어야 할 조치사항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유치원 교직원 배치 법령

유치원에 배치해야 하는 교원은 「유아교육법」상 원장, 원감, 학급담당교사이며, 「학교급식법」에 영양교사를, 「학교보건법」에서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나, 「유아교육법」에 따라 방과후과정 담당 교사, 수석교사, 보직교사를 둘 수 있으며, 직원으로는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유치원 교직원의 직무와 배치에 관한 법령을 검토하고 최근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변화가 예상되는 배치기준과 적용 범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가. 교원

「유아교육법」에서는 교직원을 원장,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 등의 교원과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의 교원 외 직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정원과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학령인구의 변동,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 제고 필요성 등으로 유치원 현장에서 교직원의 배치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는바, 유치원의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과 동일하게 원감 배치에 관한 사항과 교직원의 정원⁶⁾에 관한 사

6) 교원의 정원은 중앙정부가 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배정한 교원 수를 의미함. 정원분에 대한 인전비는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원감 외 교원과 직원의 배치기준은 지도·감독기관이 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후적인 책무를 담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였다.

〈표 II-1-1〉 유아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구분)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p>제20조(교직원의 구분)</p> <p>①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유치원에는 교원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p> <p>③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교직원의 구분)</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배치기준은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 기관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8.> [시행 2025. 9. 19]</p>

자료: 「유아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2025. 9. 8. 인출.

「유아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직원 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모두 효력이 상실된다. 현 시행령에서 교직원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23조 1항과 3항 일부, 5항, 제23조의2 1항, 3항, 제24조이다(표 II-1-2 참조).

〈표 II-1-2〉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유아교육법 시행령
<p>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p> <p>① 법 제20조에 따라 유치원에는 원장·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한다. 다만,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p> <p>②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이란 2학급 이하의 유치원을 말한다.</p> <p>③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 담당교사 외에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방과후 과정 운영 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p> <p>④ 유치원에는 원활한 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유치원 업무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p>

국가에서 지급되며 정원의 범위 내에서 교원 수급운영이 원칙임(경기도교육청, 2025a: 12).

유아교육법 시행령

⑤ 제4항에 따른 보직교사의 명칭, 종류 및 배치기준 등 보직교사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

제23조의2(수석교사의 배치기준)

① 수석교사는 유치원별로 1명씩 두되, 유아 수가 100명 이하인 유치원 또는 학급 수가 4학급 이하인 유치원에는 수석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석교사는 학급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치원 규모 등 유치원 여건에 따라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청이 정한다.

제24조(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에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자료: 「유아교육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2025. 9. 8. 인출.

참고로, 「초·중등교육법」 역시 교직원 배치기준을 각 시도교육청 관할로 두는 내용의 법 개정이 2012년 3월에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제36조의 2 교감의 미배치, 제36조의 5 학급담당교원에 관한 조항을 제외한 그 외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정한 시행령 조항이 일괄 삭제된 바 있다. 구체적인 삭제 조항은 제33~35조 초, 중, 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제36조 교감의 증치, 제36조의 3 수석교사의 배치기준, 제37조 직원의 배치기준 등 학교급별 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조항이다.

〈표 II-1-3〉 초·중등교육법: 교직원에 관한 조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③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④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3. 21.]

자료: 「초·중등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2025. 11. 8. 인출.

〈표 II-1-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직원 배치에 관한 조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삭제 <2013. 2. 15.>
제34조(중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삭제 <2013. 2. 15.>
제35조(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삭제 <2013. 2. 15.>
제36조(교감의 증치) 삭제 <2013. 2. 15.>
제36조의2(교감의 미배치)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란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된 교원의 수가 최소 배치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3. 2. 1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교육인력이나 교육재정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감 1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감은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27]
제36조의3(수석교사의 배치기준) 삭제 <2013. 2. 15.>
제36조의5(학급담당교원)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급에는 학급담당교원을 두되, 학생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학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급담당교원 1명을 더 둘 수 있다. ② 학급담당교원의 증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청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7. 2.> ③ 학급담당교원은 학급을 운영하고 학급에 속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과 그와 관련된 상담 및 생활지도 등을 담당한다. <신설 2013. 2. 15.> ④ 수석교사는 학급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교 규모 등 학교 여건에 따라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신설 2013. 2. 15.> [본조신설 2012. 3. 13.]
제37조(직원의 배치기준) 삭제 <2013. 2. 15.>
제38조(공민학교 등의 교직원의 배치기준) 삭제 <2013. 2. 15.>
제39조(고등기술학교 교직원의 배치기준) 삭제 <2013. 2. 15.>

자료: 「초·중등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2025. 11. 8. 인출.

한편 유치원이 병설된 초등학교의 교장과 교감, 영양교사, 보건교사는 유치원 원장, 원감을 겸임할 수 있고, 영양교사와 보건교사 역시 학교장 재량으로 겸임 발령을 낼 수 있다. 이는 교육공무원법의 겸임 규정에 의거한다.

〈표 II-1-5〉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겸임 규정

교육공무원법
제18조(겸임) ①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 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0. 18.>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겸임)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시킬 수 있다. 1. 관련교과나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산업대학의 교원 및 각급 연수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각급학교 교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인근학교의 교원간 또는 병설(부설)된 학교와 당해 학교를 병설(부설)한 학교의 교원간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자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2025. 11. 8. 인출.

나. 영양(교)사

「유아교육법」에는 직원으로 영양사를 배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동시에 「학교급식법」에는 유치원에 영양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라 급식을 제공하는 모든 국공립유치원과 5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이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8조의2는 모든 국공립유치원과 원아 수가 1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나,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2개원이 공동으로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에 관한 배치기준이 관할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급식법」에서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 배치기준에 관한 법령의 정비가 요구된다. 「학교급식법」 제4조제1호 단서에서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유아교육법」의 개정 취지와 「학교급식법」의 위임 근거 간 상충되는 지점이 발생할 수 있다.

〈표 II-1-6〉 학교급식법 제7조 및 부칙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 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6., 2020. 1. 29.>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자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단서의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따른 유치원 중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에 대한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

학교급식법

원정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신설 2021. 12. 28.〉

④ 제3항에 따라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1. 12. 28.〉

부칙〈법률 제16876호, 2020. 1. 29.〉

제2조(영양교사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유치원에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를 배치한 경우 제4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양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본다.

자료: 「학교급식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2025. 9. 8. 인출.

다. 보건교사 및 보건인력

「유아교육법」에는 계약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직원으로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동시에 「학교보건법」에서는 보건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보건교육의 체계적 실시에 관한 사항과 함께 학교에 두는 의료인, 약사, 보건교사에 관한 조항으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되,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순회 보건교사로 대신할 수 있는 구체적 학급 규모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표 II-1-7〉 학교보건법 및 시행령: 보건교사 배치에 관한 조항

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12. 1. 26.〉

②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21. 6. 8.〉

③ 제2항에 따라 보건교사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신설 2021. 6. 8.〉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① 삭제<2021. 12. 9.>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는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채용한다.〈개정 2021. 12. 9.〉

③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란 36학급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신설 2021. 12. 9.〉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학교의사”라 한다) 및 학교에 두는 약사(이하 “학교약사”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9.〉

(이하 생략)

자료: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2025. 9. 8. 인출.

그러나 유치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우선 「유아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의 자격 기준에 정교사 1급, 2급, 준교사만 정하고 있을 뿐, 보건교사에 대한 사항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초·중등교육법」에 보건교사 1급, 2급, 영양교사 1급, 2급을 각각 제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⁷⁾ 그러나 법제처는 「학교보건법」 상 학교에 유치원이 포함되며, 교원 자격에 보건교사의 자격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것이 보건교사를 둘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취지가 아니므로 유치원에도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⁸⁾ 다만 동시에 「유아교육법」 상 교원의 자격에 보건교사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령 정비를 권고하였다. 이에 조정훈의원 등이 2024년 11월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자격기준 마련에 관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해당 법안은 현재 계류 중이다(조정훈 의원 등 11인, 2024. 11. 29.)

〈표 II-1-8〉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자격 조항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p>제22조(교원의 자격) ① 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3. 3. 23.></p> <p>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3. 3. 23.></p>	<p>제21조(교원의 자격) ① 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檢定)·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p>

자료: 「유아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2025. 9. 8, 인출.

「초·중등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2025. 9. 8, 인출.

라. 행정직원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행정직원을 둘 수 있으며 시행령에서 관할청에서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표 II-1-9 참조). 각 시도교육청은 유치원에 배

7) 영양교사 역시 「유아교육법」 교원 자격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그동안에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상에서 이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8) 법제처 홈페이지(2019. 1. 28). 민원인-보건교사를 국·공립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 관련) [유권해석 회신문]. <https://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cSeq=416275&rowIdx=3>(2025. 11. 23, 인출)

치되는 직원의 기준에 대해 지방공무원 정원 배치기준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단설 유치원에는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치기준에 따라 별도 인력이 배치되며, 병 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에 발령된 직원이 병설유치원의 업무를 겸임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 때 행정직원의 겸임은 지방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상의 겸임 규정을 따르며 구체적인 겸임 관련 법령은 <표 II-1-10>과 같다.

<표 II-1-9> 유아교육법 시행령: 직원의 배치기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4조(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에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자료: 「유아교육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2025. 9. 8, 인출.

<표 II-1-10>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겸임 규정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겸임하게 하거나 경력직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임직원 간에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21. 6. 8.〉

[전문개정 2008. 12. 3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겸임)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5., 2016. 12. 30., 2021. 11. 30.〉

3.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겸임(제1항제4호에 따른 겸임은 제외한다)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하며, 제4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 2. 29., 2013. 11. 20., 2016. 12. 30., 2021. 11. 30.〉

4. 경력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관련이 있는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자료: 「지방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2025. 9. 8, 인출.

「지방공무원 임용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2025. 9. 8, 인출.

2. 유치원 교직원 배치 현황⁹⁾

2절에서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수합한 유치원 교직원 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유아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9) 본 절에서 제시한 지역명은 무선적으로 명명한 것으로, 각 항목별로 지칭하는 교육청은 서로 다름.

지역별 정원 규모와 운영 여건에 따라 유연한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직교사, 방과후과정 담당교사, 직원의 배치에 관한 부분은 이번 법 개정 이전부터 관할청에 정할 수 있었기에 시도 간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본 절에서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수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립유치원 교원 배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역 간 격차와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 교원

1) 원감

현행 「유아교육법」에서는 2학급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현황을 보면, 3학급 이상 모든 유치원에 원감을 배치하는 지역은 4개 지역에 불과하다.

일부 지역은 학급 수 외에 원아 수를 함께 고려하여 원감을 배치하고 있다. 3학급 이상 유치원 중에서 원아 수가 많은 유치원에 우선 배치하는 지역이 5개 지역이 있으며, 5개 지역은 4학급 이상부터 원감을 배치하고 있다. 3개 지역은 4~5학급 이상 유치원 중 충원율과 원아 수 등 고려하여 배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치기준 개선 방향과 관련한 시도교육청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지역은 현 배치기준이 적절하다 응답하였으나, 4학급 이상 중 충원 순으로 배치한다는 지역에서 확대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고, 3학급 이상 중 유아 수에 따라 배치한다는 지역에서 축소 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원감 배치 현황과 개선 방향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대체로 4학급 배치로 수렴함을 알 수 있다.

〈표 II-2-1〉 원감 배치기준

구분	배치조건	배치기준	비고
A	단설: 원당 1명, 병설: 3학급 이상	원당 1명	정원수급, 유아 수, 학급 수,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변동 가능
B	단설: 원당 1명, 병설: 3학급 이상	원당 1명	
C	단설: 원당 1명, 병설: 3학급 이상	원당 1명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배정
D	단설: 원당 1명, 병설: 3학급 이상	원당 1명	
E	단설: 원당 1명, 병설: 3학급 이상 중 유아 수 순	원당 1명	적절
F	단설: 원당 1명, 병설: 3학급 이상 중 유아 수 순	원당 1명	

구분	배치조건	배치기준	비고
G	단설: 원당 1명, 병설: 3학급 이상 중 유아 수 순	원당 1명	
H	단설: 원당 1명, 병설: 4학급 이상, 3학급 이상 중 유아 수 순	원당 1명	
I	단설: 원당 1명, 병설: 4학급(특수학급 포함) 이상	원당 1명	정원수급, 유아 수, 학급 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미배치
J	단설: 원당 1명, 병설: 4학급 이상	원당 1명	
K	단설: 원당 1명, 병설: 4학급 이상	원당 1명	3학급 배치: 1개교
L	단설: 원당 1명, 병설: 4학급 이상	원당 1명	
M	단설: 원당 1명, 병설: 4학급 이상	원당 1명	3학급 배치: 1개교
N	단설: 원당 1명, 병설: 4학급 이상	원당 1명	
O	단설: 원당 1명, 병설: 4학급 이상 중 총원을 순	원당 1명	확대 배치 필요
P	단설: 원당 1명, 병설: 5학급 이상 또는 원아 수 64명 이상	원당 1명	
Q	단설: 원당 1명, 병설: 5학급 이상 또는 4학급 중 원아 수 48명 이상	원당 1명	

주: 각 지역코드는 임의로 부여하였음.

2) 보직교사

유치원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유치원 업무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2024년 2월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¹⁰⁾에 따라 보직교사 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고 있어 배치기준은 교육청별로 상이하다(표 II-2-2 참조).

법 개정 전에는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 유치원에 1명, 6학급 이상 11학급 이하 유치원에 2명, 12학급 이상 유치원에 3명 이상을 배정하였으나 개정 이후 지역별 수요에 맞춰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모든 유치원에 보직교사를 배치한다는 1개

10) 보직교사 배치에 관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전후는 다음과 같음.

개정 전	개정 후
<p>④ 유치원에는 교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11학급 이하의 유치원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1명을 더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의 유치원: 1명 2. 6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의 유치원: 2명 3. 12학급 이상의 유치원: 3명 이상 <p>⑤ 제4항에 따른 보직교사의 명칭은 관할청이 정하고, 유치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분장을 원장이 정한다.</p>	<p>④ 유치원에는 원활한 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유치원 업무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른 보직교사의 명칭, 종류 및 배치 기준 등 보직교사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p>

시도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에서 3학급 이상에서 보직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학급 수에 따라 배치규모를 달리함에 따라 각 지역별 유치원 규모 특성에 따라 배치 상세기준도 달라진다. 최소 2명에서 학급 수에 따라 최대 9명까지 배치 가능하도록 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연구학교 여부, 특수학급 유무 등 각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증지도 가능하다.

보직교사는 원장의 업무분장에 따라 교무부장, 연구부장 등의 부장교사로 지정 하며, 주로 담임교사 중에 맡는다. 주당 수업시간은 대체로 담임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표 II-2-2〉 보직교사 배치기준

구분	배치조건	배치기준	비고(역할 등)
A	모든 학급	5학급 이하: 1명 6-10학급: 2명 11학급 이상: 3명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 및 교육감 지정 시범유치원에는 보직교사 1인 증치 가능
B	3학급 이상	3-4학급: 1명 5-7학급: 2명 8-11학급: 3명 12-14학급: 4명 15-17학급: 5명 18학급: 6명	
C	3학급 이상	3-5학급: 1명 6-8학급: 2명 9-11학급: 3명 12학급 이상: 4명	
D ¹⁾	3학급 이상	3-4학급: 1명 이내 5-7학급: 2명 이내 8-11학급: 3명 이내 12-17학급: 5명 이내 18-23학급: 5명 이내 24학급 이상: 9명 이내	*다만, 11학급 이하의 유치원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위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1명을 더 둘 수 있다. *학급 수 감소에 따라 보직교사 수 감소 시 당해에 한해 1명 증치 가능 *2026 기준
E	3학급 이상	3-4학급: 1명 5-6학급: 2명 이내 7-11학급: 3명 이내 12-17학급: 5명 이내 18학급: 6명 이내	
F	3학급 이상	3-4학급: 1명 5-6학급: 2명 7-12학급: 3명 13학급 이상: 4명	*특수학급 3학급 이상: 희망 원에 한해 1명 증치

구분	배치조건	배치기준	비고(역할 등)
G	3학급 이상	3~4학급: 1명 5~6학급: 2명 7~11학급: 3명 12~14학급: 4명 15학급 이상: 5명 이내	*특수학급 3학급 이상 또는 혁신자치유치원 1명 증치
H	3학급 이상	3~5학급: 1명 6~11학급: 2명 12학급 이상: 3명	
I	3학급 이상	3~5학급: 1명 6~11학급: 2명 12학급 이상: 4명	11학급 이하의 유치원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는 배치기준 외에 1인의 보직교사를 더 둘 수 있다.
J	3학급 이상	3~5학급: 1명 6~11학급: 2명 12학급 이상: 3명	
K	3학급 이상	3~5학급: 1명 6~11학급: 2명 12학급 이상: 3명	2026.3.1.자 배치기준 변경 예정
L	3학급 이상	3~5학급: 1명 6학급 이상: 2명	
M	3학급 이상	3~5학급: 1명 6~11학급: 2명 12학급 이상: 3명	*방과후과정 정교사 배치: 추가 1명 *11학급 이하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 추가 1명
N	3학급 이상	3학급: 1명 4~5학급: 2명 6~11학급: 3명 12학급 이상: 5명	
O	3학급 이상	3학급: 1명 4~5학급: 2명 6~11학급: 3명 12~17학급: 5명 18~23학급: 7명 24학급 이상: 9명	
P	3학급 이상	3학급: 1명 4~5학급: 2명 6~11학급: 3명 12~17학급: 6명 이내 18~22학급: 7명 이내 23학급 이상: 9명 이내	
Q	3학급 이상	3학급: 1명 4~5학급: 2명 6~11학급: 3명 12학급 이상: 4명	2인 담임제

주: 1) 해당 교육청은 2026년을 기준으로 작성함.

2) 각 지역코드는 임의로 부여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수합한 시도교육청 공립유치원 교원 배치기준 현황 자료에 근거함.

3) 방과후과정 담당

방과후과정 담당 교사의 경우 지역에 따라 배치 여부 및 규모가 상이하다. 자료 공개를 허락한 16개 시도교육청을 기준으로 방과후과정 담당으로 강사나 공무직이 아닌 교원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11개 시도교육청이며, 기간제교원을 배치한 1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지역은 정규교원을 방과후과정 담당으로 배정하고 있다.

정규교원 또는 정원내 기간제교원을 우선 배치하는 기준으로는 원아 및 학급 규모를 고려하며 주당 수업시간의 경우 교육과정 교사와 동일하게 대체로 20시간이며, 1일 8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정한 교육청도 있다.

〈표 II-2-3〉 방과후담당 교사 배치기준

구분	배치규모			배치기준	주당 수업시간	개선 방향
	정규 교원	정원내 기간제	정원외 기간제			
A		18		단설유치원 배치		불필요
B	3	1	292 ¹⁾	학급 수 대비 초과교사 중 희망자 선정	1일 8시간 근무	축소
C	3	68	68		20시간 (30시수) ²⁾	불필요
D	45		340 내외	1. 단설: 학급 수가 많은 유치원 2. 병설유 3. 단설 8학급 이하		축소
E	72	34	320	4~5학급 1명, 6~9학급 2명, 10학급 이상 3명	20시간	-
F	74	16		단설: 원아 수 35명 미만 1명, 원아 수 35명 이상 2명, 원아 수 70명 이상 3명 병설: 원아 수 40명 이상 1명 *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0시간	적절
G	100		601 ³⁾		20시간	-
H	139			(2담임제) 3세 단일연령 학급, 혼합연령 학급 중 유아 수가 많은 유치원	20시간	축소
I	165		255	1학급: 유아 수 18명 이상 1명 2학급: 유아 수 28명 이상 1명 3학급: 유아 수 33명 이상 1명 유아 수 50명 이상 추가 1명 4학급: 원당 2명	20시간	적절

구분	배치규모			배치기준	주당 수업시간	개선 방향
	정규 교원	정원내 기간제	정원외 기간제			
				유아 수 70명 이상 추가 1명 5학급: 원당 3명 유아 수 100명 이상 추가 1명 6학급: 4명 9학급: 7명 10학급: 8명		
J	171	73		방과후과정 학급당 1명 (지역별, 학급 수, 유아 수 고려하여 배치)	20시간	적절
K	187	15			20시간	적절
계	959	225	2,018			

주: 1) 방과후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2) 1시수 = 40분

3) 방과후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4시간)

4) 각 지역코드는 임의로 부여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수합한 시도교육청 공립유치원 교원 배치기준 현황 자료에 근거함.

4) 추가배치교사(비담임교사)

17개 시도교육청 중 9개 지역이 기간제교원을 포함하여 추가배치교사인 비담임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이 중 정규교원을 비담임교사로 배치한 곳은 5개 지역이며 나머지 4개 지역은 기간제교원을 활용 중에 있다.

업무 성격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선 단위활동 또는 특색수업을 담당하며, 보결수업 지원과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이다. 명칭은 업무전담(지원)교사, 수업지원교사, 지원교사 등 시도교육청별로 다르게 명명하고 있다. 배치는 큰 규모 기관 중심으로 배치한다. 이 중 기간제교원을 배정하여 아침돌봄을 함께 담당하도록 하는 지역도 있다. 주당 수업시간은 8시간에서 20시간으로 시도교육청마다 다르다.

다음은 보결수업을 담당하는 순회교사이다. 4개 교육청에서 운영 중이며 정규교원이 아닌 기간제교원을 배치한다. 이들은 보결전담교사 또는 보결강사로 불리며, 교육행정기관에 배치하거나 거점(중심)유치원에 발령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중심유치원에 배치된 경우 순회유치원 결원 시 보결 지원과 중심유치원의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업무를 함께 한다.

이주배경유아 비율이 높은 지역의 다문화정책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을 담당하는 한국어학급교사를 배치하여 한국어학급을 운영 중에 있다. 현재 2개 교육청에서 정규교원을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개 교육청은 기간제교원이 이 역할을 하고 있다. 수업시간은 20시간 내외이다.

5) 유아교육진흥원

2025년 3월 기준, 전국의 유아교육진흥원은 본원과 분원을 포함하여 33개원이 운영되고 있다. 유아교육진흥원 인력은 교육전문직 76명, 일반직 112명, 교육공무직 219명, 파견교원 69명, 기간제교사 39명, 기타인력 35명으로 총 550명이며, 파견교원과 기간제교사는 약 20%를 차지한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파견교원은 1~10명까지 교육청별로 차이가 있다.

〈표 II-2-4〉 전국 유아교육진흥원 인력 현황

단위: 명, %

구분	교육 전문직	일반직	교육 공무직	파견 교원	기간제 교사	기타	소계
수	76	112	219	69	39	35	550
비율	13.8	20.4	39.8	12.5	7.1	6.4	100.0

주: 2025. 3. 기준임.

자료: 교육부(2025a). 전국 유아교육진흥원 인력 현황.

나. 영양(교)사, 보건교사

1) 영양(교)사

영양교사는 「학교급식법」에 의해 배치하고 있으나, 영양교사의 유치원 배치에 대한 상세법령이 만들어지기 이전 이미 영양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부칙에 따라 영양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본다. 국공립유치원은 약 91.7%에 관련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나, 사립유치원은 절반 정도인 56.3%에 불과하다. 병설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립유치원 모두 영양사의 비율이 더 높고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와 급식실을 함께 사용함에 따라 초등 배치 영양교사 비율이 높다. 사립유치원에 배치된 관련 인력 중 90.2%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는 경우이며, 나머지는 영양교사

이며, 기간제보다는 정교사를 채용한 비율이 더 높다.

〈표 II-2-5〉 전국 유치원 영양(교)사 배치 현황

단위: 원, 명, %

설립유형	유치원 수	영양교사 (정교사)	기간제교사	영양사	계	배치율
국공립						
국립	3	0	0	3	3	100.0
공립(단설)	596	120	97	321	538	90.3
공립(병설)	4,016	2,907	167	616	3,690	91.9
소계	4,615	3,027	264	940	4,231	91.7
사립	2,899	120	40	1,472	1,632	56.3
총계	7,514	3,147	304	2,412	5,863	78.0

주: 1) 2025. 4. 1. 기준임.

2) 초등학교에 배치, 유치원에 단독으로 배치, 2개 이상 유치원에 공동으로 배치된 교사를 모두 포함함.

자료: 교육부(2025b). 전국 유치원 영양(교)사 배치 현황.

2) 보건교사

〈표 II-2-6〉은 전국 유치원에 배치된 보건교사 현황이다. 「학교보건법」에서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국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율은 여전히 미흡하다. 국립유치원과 공립단설유치원의 경우 기간제교사, 간호사를 포함하더라도 배치율이 60%대에 머물고 있으며 기간제 교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표 II-2-6〉 전국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현황

단위: 원, 명, %

설립유형	유치원 수	보건교사 (정교사)	기간제 교사	간호(조무)사	계	배치율
국공립						
국립	3	0	2	0	2	66.7
공립(단설)	596	59	256	65	380	63.8
공립(병설)	4,016	3,349	528	1	3,878	96.6
소계	4,615	3,408	786	66	4,260	92.3
사립	2,899	1	0	7	8	0.3
총계	7,514	3,409	786	73	4,268	56.8

주: 1) 2025. 4. 1. 기준임.

2) 초등학교에 배치, 유치원에 단독으로 배치된 교사를 모두 포함함.

자료: 교육부(2025c). 전국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현황.

다. 직원

〈표 II-2-7〉은 단설유치원에 배치되는 지방공무원 행정직원의 배치기준을 바탕으로 배치규모별 학급 수를 정리한 표이다. 지역별로 행정직원 배치 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학급 수를 기준으로 2~4명까지 배치하며, 이들은 교무행정과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독립된 행정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초등학교에 배치된 행정직원이 유치원 업무를 겸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유치원의 학급 수를 고려하여 행정직원을 배치하며, 그 기준은 지역이나 교육지원청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병설유치원의 학급 수를 초등학교 학급 수에 그대로 가산하거나, 2배로 환산하여 반영하기도 하며, 4학급 이상인 경우에 한해 추가로 1명을 증원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도 한다.

〈표 II-2-7〉 각 지역별 행정직원 배치규모별 학급 수

단위: 학급

구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2명		~15		~20			전체	~7	*	~13					전체
3명	전체	16~	~17	21~	~17	전체		8~	*	14~	전체	~7	~10	전체	
4명			18~		18~							8~	11~		

주: 1) 단독배치에 한한 자료이며, 병설은 전국 초등 겸임 배치함. 2개 지역 무응답 제외

2) 각 지역코드는 임의로 부여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수합한 시도교육청 공립유치원 직원 배치 현황 자료에 근거함.

3.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각 시도교육청 여건에 맞는 교직원 배치가 가능해졌으며 이는 각 지역교육청의 교육자치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직원 배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제도적 변화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동시에 지역 간 편차가 나타날 수 있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 보장 측면에서 지역 간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과제가 대두된다. 또한 유치원 교직원의 배치는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의거함에 따라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동법 시행령,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교직원의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시도교육청 교원 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배치기준이 있더라도, 지역별 정원이나 원아 수 감소에 따른 학급 수 감축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었다. 원감은 법령상 3학급 이상 배치가 필요하지만, 많은 지역에서 4학급 이상부터 별도 원감을 배치하거나 3학급 이상에 배치할 때에는 유아 수를 고려하는 등 지역별 교원 수급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이 필요 하나, 인구 감소로 인한 학급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교원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관할청에 배치기준을 두도록 한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방과후담당 교사에 대한 배치 여부는 관할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에 따라, 2인 담임제와 같이 이를 적극 활용하는 지역과 과원에 따라 한시적으로 배치하는 지역, 그리고 정규교원의 배치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지역으로 나뉜다. 보직교사 수도 2024년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빠르게 보직교사 확대를 추진한 지역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다. 지역적 여건에 맞는 배치가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부 지역의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1학급 1담임 체계에서 나아가 현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유형의 교사가 이미 운영되고 있었다. 정규교원이 특정 수업과 업무를 전담하는 비담임교사와 함께 강사 또는 기간제 교원을 두어 인근 유치원의 보결을 지원하는 등 현장의 필요에 따라 교원 배치가 다양화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배치기준 역시 시도교육청마다 상이하여 현장에서 지역간 편차가 이미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영양(교)사와 보건인력 배치는 관련 법령의 차이, 병설된 유치원의 겸임으로 영양교사와 기간제 교원, 공무직 등 여러 유형으로 혼재되어 있다. 장기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하나, 배치기준 마련 시 관련 현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상황을 유치원 교직원 배치기준 표준안 마련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준안은 시도간 차이를 고려하여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시도교육청이 이를 기초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전담교사, 수업지원교사, 업무지원교사, 보결전담교사

II. 유치원 교직원 배치 법령 및 현황

등 현장에서 이미 발생한 다양한 교사 유형과 수요를 파악하고 배치 가능한 비담임 교사를 유형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II

III

초·중등학교 교원 배치기준 및 비담임교사 제도

- 01 초등학교 교원 배치기준: 서울, 경기
- 02 교과전담교사
- 03 순회교사
- 04 시사점

III. 초·중등학교 교원 배치기준 및 비담임교사 제도

3장에서는 교직원 배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및 비담임교사 제도를 분석하였다. 이들 학교는 이미 2012년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2013년부터 10년 이상 교직원 배치 기준을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교과전담교사를 비롯해 기초학력 전담교사, 진로상담교사, 순회교사 등 다양한 유형의 교원을 활용해 왔다.

1절에서는 먼저 서울과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초등학교 교원 배치기준을 분석하고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두 지역 간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어 전담교사와 순회교사 등 초등학교에서 활용하는 추가배치 교사 활용 방안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여 유치원 배치기준 표준안 마련 시 고려해야 할 구조적 요소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초등학교 교원 배치기준: 서울, 경기

〈표 III-1-1〉과 〈표 III-1-2〉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2025 초등학교 교원 배치기준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초중등 학교급별 교원 배치기준이라는 문서로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각급 학교에 두는 교원 배치기준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2025 교육 공무원 인사실무편람(초등·유아)」에서 교원 정원에 관한 사항에서 배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교장, 교감, 교사 등 구체적 배치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교장과 교감에 관해서는 표현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법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교장은 학교당 1명, 교감은 42학급까지는 1명, 43학급부터는 2명, 5학급 이하 미배치 허용에 대해서는 동일하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은 학기 중 학급 증가, 교감의 학기

중 전보, 통합학교나 분교장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정하고 있다. 이는 서울에 비해 규모가 크고, 도시와 농어촌이 혼재되어 있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내용이라 볼 수 있다.

보직교사에 대한 기준은 두 개 지역이 차이가 있다. 서울은 20학급 이하에 10명 이내, 21~26학급 11명 이내, 27~32학급 12명 이내, 33학급 이상 13명 이내로 하여 상한을 정해두고 각 학교의 자율적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보직교사 임용에 관한 별도의 장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11학급 이하 3명, 12~17학급 5명, 18~23학급 7명, 24~29학급 9명, 30~35학급 10명, 36학급 이상 12명, 그리고 5학급 이하의 분교장에 1명, 43학급 이상 학교 중 복수교감 미배치교에 1명 증치로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사에 대해서는 학급당 1명의 학급담당교사에 대해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과전담교사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서울과 경기 모두 1학급 당 0.25명(4학급 당 1명)을 기본으로 하나, 경기에서는 3학급 이상에 배치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전체 학급 수 35학급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1~6학년 학급 수를 기준으로 4~6학급마다 1명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으로 더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두 지역 모두 매년 학급 수나 교육부 교원 정원 수급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은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나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포함하여 배치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파견교사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표 III-1-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 초중등 학교급별 교원 배치기준

I. 목적
II. 추진 배경
III. 법적 근거
IV. 학교급별 교원 배치기준
1. 초등학교 교원 배치기준
가. 교장 배정: 학교당 1명 배정
나. 교감 배정: 42학급 이하 학교당 1명, 43학급 이상 학교당 2명 배정
※ 단, 매년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급 수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배정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제19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 2에 따라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에는 교감을 미배치하여야 하나, 교육감이 교육인력이나 교육 재정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감1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감은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

다. 수석교사의 배치기준

- 1) 수석교사는 1교 1명 이내로 배치하며, 신규로 선발된 수석교사는 가급적 원소속 학교에 배치하고, 재심사 후 재임용된 수석교사는 타 학교로 전보 배치한다.
- 2) 수석교사는 학교규모, 지역별 수급상황 및 현임교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라. 보직교사의 배치기준

- 1) 초등학교는 교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 | |
|-------------------------------|
| ① 20학급 이하의 학교: 10명 이내 |
| ② 21학급 이상 26학급 이하의 학교: 11명 이내 |
| ③ 27학급 이상 32학급 이하의 학교: 12명 이내 |
| ④ 33학급 이상의 학교: 13명 이내 |
- ※ 보직교사 배치기준의 학급 수: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별학급을 모두 포함한 학급 수

2) 다만,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와 교육감 지침에 따라 추가 설치된 진로관련 부서에는 보직교사 1명을 더 둘 수 있다.

3)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교사'로 하며, 학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 분장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4) 초등학교의 장은 1),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보직교사를 더 둘 수 있다.

마.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는 교장·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을 배치한다.

바. 초등학교에는 각 학급담당교사 외에 교사의 근무부담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기타 교과를 전담하는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산정기준은 학교별로 일반학급 3학년 이상 1학급마다 0.25명으로 한다.

※ 단, 매년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급 수, 교육부 교원 정원에 따라 교과전담교사 산정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사. 교육부 배정 정원 내에서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교과전담교사를 추가 배정할 수 있으며, 별도 계획에 의한다.

※ 교과전담교사의 교과 및 수업시수는 학교 규모와 실정, 담당업무의 경종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아. 초등학교에는 '마' 항 및 '비' 항의 교사 외에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2. 중학교 교원 배치기준

3. 고등학교 교원 배치기준

4. 특수학교, 통합학교 및 각종학교 교원 배치기준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2025). 초중등 학교급별 교원 배치 기준.

〈표 III-1-2〉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 교원 배치기준

제1장 교육법과 교원 정원

4. 교원 정원

나. 초등학교 교원의 배치 기준

※ 교원 배치 기준은 매년 정원 수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 교장: 학교장은 전 학교에 배치한다. 단, 초·중·고 통합학교는 예외로 한다.

2) 교감

- 가) 6학급 이상의 전 학교에 교감 1명을 배치한다.
- 나) 5학급 이하인 학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교감을 배치하는 경우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
- 다) 43학급(특별학급 포함, 특수학급 제외) 이상의 학교에는 교감 1인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라) 학기 중에 학급 증가로 인해 43학급 이상이 되는 학교 또는 복수교감 학교의 교감 1인이 학기 중 전보하였을 경우 다음 년도에 43학급 미만이 예상되는 학교는 교감 1인을 추가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마) 초·중·고 통합학교나 분교장에는 교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바) 6학급 이상 분교장이 해당부서로부터 도심형 분교장으로 지정된 경우 분교장에 교감 1인을 배치할 수 있다.
- 3) 교사
- 가) 각 학급마다 학급 담임교사 1인을 배치한다.
- 나) 교과전담 교사는 경기도 교과전담 배치 기준에 의해 배치한다.
- 학급 수 별 배치 기준
 - 35학급 미만교(1~6학년 학급 수 기준)

1~6학년 학급 수	1~2	3~6	7~11	12~17	18~23	24~28	29~34
배치인원	0	1	2	3	4	5	6

- 35학급 이상교(3~6학년 학급 수 기준)

3~6학년 학급 수	1~2	3~4	5~8	9~12	13~16	17~20	21~24	25~28
배치인원	0	1	2	3	4	5	6	7
3~6학년 학급 수	29~32	33~36	37~40	41~44	45~48	49~52	53~59	X
배치인원	8	9	10	11	12	13	14	X

※ 학급 수 산정 시 특수학급 및 특별학급은 포함하지 않는다.

※ 학급 수별 교과전담 배치 기준 외에 정원 수급 상황에 따라 교감 미배치교 등의 경우 1인을 추가배치 할 수 있다.

- 다) 경기도교육청 유관기관에 학생 교육 등을 수행하는 경우 파견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2장. 교원의 임용

3. 보직교사 임용

- 다. 유초등 보직교사 배치 기준

초등학교		유치원		비고
학급 수	보직교사 수	학급 수	보직교사 수	
11학급 이하	3	경기도는 보직교사 명칭을 부장교사로 정함	3학급	
12~17	5		4~5	
18~23	7		6~11	
24~29	9		12~17	
30~35	10		18~23	
36학급 이상	12		24~29	
5학급 이하의 분교장	1			
43학급 이상 학교	+1 가능			

증 복수교감 미배치교				
※ 보직교사 배치를 위한 학급 수 산정 시에는 특수·특별학급(재택학급 포함)의 수를 포함한다.				

출처: 경기도교육청(2025a). 2025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초등·유아). p. 13, p. 29.

2. 교과전담교사

가. 개념 및 도입배경

초등학교의 교과전담제는 학급을 담당하지 않은 교사가 특정 학년과 학급을 대상으로 특정 과목을 담당하여 지도하는 제도이다(김선혜, 2004). 이는 한 명의 교사가 모든 교과를 담당할 때 발생하는 전문성 약화와 수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1960년대 초 이화여대 사범대 부속초등학교에서 처음 실험적으로 시행되었다. 1991년 교육부의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교육부문 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예·체능 교과를 중심으로 단계적 실시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한 데 이어, 1992년 3월 6일 ‘교육법 시행령’ 제37조 2항을 개정함으로써 전면 도입되었다(김선혜, 2004). 제도 도입 당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는 체육·음악·미술·영어 등 특정 교과의 전담교사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4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인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3). 이후 1999년에는 교원자격검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교사 자격증에 전담 교과를 표시하였으나, 2013년 시행령 개정으로 전담교사 배치 근거 조항이 삭제되면서 현재는 시도교육청의 운영 계획에 따라 학교장이 3~6학년 대상 교과를 선정해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이금이, 2017).

나. 목적 및 역할

초등학교 교과전담 교원제는 교원들의 과다한 수업부담을 경감시키고 교과지도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있다(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3). 전담교사가 지도하는 교과목은 각 학교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지만, 대체로 음악, 체육, 과학, 영어가 주를 이룬다. 2024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전담교원 비중은 전체

교원의 14.2%를 차지하며, 과목별로는 영어, 과학, 체육, 음악 순으로 나타났다. 각 학교별 구체적 교과목은 학교실정, 학생의 흥미, 학부모 요구를 감안하여 학교 장이 정한다.

〈표 III-2-1〉 교과목별 초등학교 교원수(2024)

단위: 명, %

구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컴퓨터	재량 활동	통합 교과	도덕	기타	계
수	341	131	119	8,040	5,565	1,610	175	466	8,324	65	154	608	499	1,771	27,868
비율	1.2	0.5	0.4	28.9	20.0	5.8	0.6	1.7	29.9	0.2	0.6	2.2	1.8	6.4	100.0

주: 전담 교원과 비전담 교원으로 구분되며, 전담 교원 중 교과목 담당 교원을 계수하여 산정함(기간제 교원 포함)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4). 2024 교육통계분석자료집-유초중등 교육통계편, p.108.

다. 운영

전담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은 각 교육청별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 방침 또한 시도별로 다른데, 여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전담교사 배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담교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초등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자세히 기재하여 공개하고 있다. 전담교사의 수업시수, 과목, 교사 배정, 교실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우선, 수업시수는 주당 16시간 이상을 수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교과 및 창체 전담교사는 24시간까지, 체육교과와 기초학력 전담교사는 22시간까지 수업이 가능하다. 특히 학교 업무분장 등을 이유로 전담교사의 주당 수업시수가 16시간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담교사 배치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교사를 우선 배정한다는 점, 그리고 영어교과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영어 심화연수과정 이수자에게 3년 동안 영어교과를 전담할 수 있도록 우선 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교과전담이 일정 부분 교사의 업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동시에 수업 전문성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3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지원

III.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유의 사항

2. 전담교사 운영

가. 학급 담임교사의 근무 부담 경감과 교육과정 운영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은

담임을 맡지 않은 교사에게 전담하게 할 수 있으며, 주당 수업 시수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연번	구 분	주당 수업 시수	비 고
1 전담 교사	일반교과 및 창체 전담교사	16~24시간	
	체육교과 전담교사	16~22시간	
	기초학력 전담교사	16~20시간	
2 수석 교사	수석교사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평균수업시간 수의 1/2 경감하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3 겸임 교사	교육지원청 등 기관 겸임교사	4~10시간	주당 수업 시수 외의 시간은 겸임기관의 학생지도 등
		※ 겸임기관과 사전 협의	

나. 학교장은 학교의 실정, 학생의 흥미, 학부모의 요구를 감안하여 전담교사의 배치가 요구되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선정한다.
 다. 학교장은 학년별 교사의 수업 부담 등 학교 전반 여건을 고려하여 1, 2학년에도 전담교사를 배치 할 수 있다.
 라. 전담교사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교사를 우선 배정한다.
 마. 학교의 유류 교실은 전담교실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전담교사 운영 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도록 한다.
 ○ 6개월 이상 영어심화연수과정 이수자는 재직 중 3년 동안 영어교과를 전담할 수 있도록 우선 배 정한다.
 ○ 학교 업무분장 등을 이유로 전담교사의 주당 수업 시수가 16시간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한다.

자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2025). 2025학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p. 38.

3. 순회교사¹¹⁾

가. 개념 및 도입배경

순회교사는 보통 특정 학교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소속을 두고 2개교 이상의 학교를 순회 또는 겸임하며 담당교과목을 지도하거나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의미한다(경기도교육청, 2025b). 순회교사제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겸임), 제22조의 2(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겸임)에 근거를 두고 여러 학교 혹은 교육 행정기관 겸임 발령의 형태로 운영된다(우선영·박효원, 2023). 겸임발령은 특수교육순회교사나 전문상담

11) 순회교사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원하는 특수교육순회교사, 지역교육청에 소속되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순회상담을 지원하는 전문상담순회교사, 그리고 교과순회교사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교과순회교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함.

순회교사와 다른 중등교육단계 교과교사의 순회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며, 현장에서의 순회교사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I-3-1〉 교육공무원법 제18조(겸임)

제18조(겸임)

- ①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 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0. 18.>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겸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제9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자료: 「교육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2025. 11. 8. 인출.

〈표 III-3-2〉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 2(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제22조의 2(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 ① 교육감은 교원의 적정한 배치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둘 이상의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그 학교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1. 9. 30.]

자료: 「교육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2025. 11. 8. 인출.

〈표 III-3-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2(겸임)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시킬 수 있다. <개정 1993. 2. 24., 1999. 9. 30., 2005. 4. 15.>
1. 관련교과나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산업대학의 교원 및 각급 연수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1. 2. 1., 1995. 3. 25., 2001. 1. 29., 2005. 4. 15., 2008. 2. 29., 2013. 3. 23., 2023. 8. 30.>
1. 각종 과학기술직렬 또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기술직렬 또는 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학교의 자연과학계 교육공무원간
 2. 학예·공안 및 행정직군의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전문대학이상의 각급학교의 인문사회과학계 교육공무원간
 3. 각급학교 교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인근학교의 교원간 또는 병설(부설)된 학교와 당해 학교를 병설(부설)한 학교의 교원간

-
4. 정부투자기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등 정부산하단체의 임직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교육공무원간
5.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의 임·직원과 그 직무내용이 유사한 교육공무원간
③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겸임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0조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4조에 따른 대학병원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0조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2조에 따른 치과병원장과 「암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국립암센터원장으로서의 겸임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5. 3. 25., 1995. 5. 29., 2001. 12. 31., 2004. 3. 9., 2005. 4. 15., 2008. 4. 16., 2011. 5. 30., 2023. 10. 1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 3. 11.]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1982·3·11>]

자료: 「교육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2025. 11. 8. 인출.

III

순회교사는 주로 교과별 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소규모 학교나 학생들의 이수 시간 수가 적은 예체능 및 희소교과목에 대한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그 수요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우선영·박효원, 2023).

나. 목적 및 역할

순회교사의 배경 및 목적은 교육청마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1) 농산어촌 및 소규모 학교에서 교과교사 미배치로 발생하는 상치과목 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 2) 소수 정원 교과 및 선택과목에 대한 수업 지원을 통해 학생의 교과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보, 3) 과목별 수업시수 불균형을 해소하고 평균 수업시수 미달 교사의 순회·겸임 근무를 활용함으로써 교원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 4) 교육지원청 단위의 순회교사 운영과 명확한 복무 기준 제시를 통해 학교 현장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고 교육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경기도교육청, 2025a; 경상남도교육청, 2023; 울산광역시교육청, 2021; 전라북도교육청, 2021).

순회교사는 특정학교에 소속을 두는 순회교사와 교육행정기관에 소속을 두는 순회교사로 나뉘어지는데, 전자의 경우 특정학교에 소속을 두고 2개교 이상의 학교를 순회 또는 겸임하여 학생을 교육하거나 학교장이 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경기도교육청, 2025b: 109). 후자의 경우 교육행정기관에 소속을 두

고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2개교 이상의 관내 또는 인근지역 학교를 순회하면서 소속기관장 또는 순회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경기도교육청, 2025b: 109). 정리하면, 소속학교 및 순회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의 학습지도 및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 운영

최근 순회교사 제도는 학급의 감소에 따라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에 따라 현장에서는 더욱 해당 제도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국 중등순회교사가 2021년 6,412명, 2022년 6,433명, 2023년 6,58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 III-3-4〉 전국 중등학교 겸임(순회)교사 현황: 2021~2023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단위: 명
																		총계
2021	71	165	275	319	401	191	97	108	844	322	456	476	812	504	636	422	313	6,412
2022	72	172	269	325	388	208	95	123	820	329	513	462	745	559	604	469	280	6,433
2023	76	159	273	303	374	243	120	92	858	308	545	412	781	583	711	498	250	6,586

자료: 뉴스1(2023. 10. 17일자 기사). 비전공 과목 가르치는 상치교사와 순회교사 증가…충북 올해 596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113890?sid=102>(2025. 11. 23, 인출)

순회교사의 복무관리는 NEIS 근무상황으로 일원화 되어 있는데, 소속학교와 순회학교의 복무로 구분한다(경기도교육청, 2025a: 109). 일반적으로 복무는 순회학교장의 협조를 받아 소속학교장의 책임 아래 관리한다(경기도교육청, 2025a: 109; 경상남도교육청, 2025: 4). 일부 지역교육청은 순회교사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 예로 울산광역시교육청(2021)은 승진 또는 전보 시 가산점 제공, 농산어촌 순회교사에 대해서는 수당지급, 표창 및 연수기회 부여, 그리고 근무장소 제공, 학생 지도에 필요한 교육시설물 이용, 교육자료 활용, 교과협의회의 참석, 학생 및 학부모 상담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등 기타 행정상의 사항 등의 우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2021) 역시 전보 우대 가산점과 농산어촌 순회교사 수당을 지급하고, 각종 포상 대상으로 고려하며 ‘복지보험 및 안전공제회’ 지원을 통한 안전 강화,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라. 초등 순회보결전담교사

초등학교에서는 전담교사를 유연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에 보결 수업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¹²⁾ 2024년까지는 보결 전담교사로 정원 외 기간제 교사 를 채용하여 운영하였으나 2025년에는 정규교원을 배치하여 운영 중이다.

이들은 중심학교에 소속되며, 순회학교의 결손 발생 시 해당 학교로 출근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중심학교 교육과정 관련 업무지원도 가능하다(경상남도교육청, 2025.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인근 학교의 3일 이상 1개월 미만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와 출장에 의한 보결 수업을 지원하고, 3일 미만의 단기 수업 결손은 3일 이상의 보결수업 요청이 없을 때 중심학교와 사전 협의한 경우에 한해 지원되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그림 III-3-1] 경남 관내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초등 순회보결전담교사 신청 현황 화면1

오늘	이전달	다음달	2025년 11월							일정목록	월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6	27	28	29	30	31	1
초교사 [] 초	초교사 [] 초등학교												
초교사 [] 초등학교													
초교사 [] 초등학교													
초교사 [] 초등학교													
초교사 [] 초등학교													
초교사 [] 초등학교													

자료: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s://cwedu.gne.go.kr/cwedu/st/sbstTeacher/selectTeacherReqstCalendar.do?sysId=cwedu&teacherSeq=&bbsId=3753&mi=9928&date=&area=CW\(2025. 11. 11, 인출\).](https://cwedu.gne.go.kr/cwedu/st/sbstTeacher/selectTeacherReqstCalendar.do?sysId=cwedu&teacherSeq=&bbsId=3753&mi=9928&date=&area=CW(2025. 11. 11, 인출).)

12) 이외에도 경남교육청에서는 유치원 보결 수업을 위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여 지원하고 있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1주 이하(수업일 5일)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와 출장에 의한 보결 수업을 대상으로 함. 보결 수업 전담 기간제교사는 중심유치원에 근무, 타유치원에서 보결 수업 요구가 있을 시 보결 수업에 임함,

경상남도교육청은 보결수업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수업 결손을 신청하고 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 및 배정 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은 반드시 교감(부재 시 업무대행자)을 통하여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청화면에서 알 수 있듯, 교과전담 및 특정 학급에 대한 수업 결손에 모두 대응가능하며, 중심학교 내 발생한 보결 신청도 동일 절차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그림 III-3-2] 경남 관내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초등 순회보결전담교사 신청 현황 화면2

번호	보결수업교사	보결수업 학년 반 인원	신청기간	신청학교명	신청일
6739	초교사	5-7	2025/11/04 ~ 2025/11/05	동초	2025.11.02
6738	초교사	4-3	2025/11/03 ~ 2025/11/03	초등학교	2025.10.31
6737	초교사	6학년 3반; 28명	2025/11/29 ~ 2025/12/19	초등학교	2025.10.31
6736	초교사	5학년 과학	2025/12/03 ~ 2025/12/05	초등학교	2025.10.31
6735	초교사	4학년 1반	2025/11/24 ~ 2025/11/28	일초등학교	2025.10.27
6734	초교사	1-1반 13명	2025/11/26 ~ 2025/11/28	초등학교	2025.10.27
6733	초교사	1학년 3반 21명	2025/11/25 ~ 2025/11/28	동초	2025.10.27
6732	초교사	전담	2025/11/22 ~ 2025/11/24	초등학교	2025.10.24
6731	초교사	3학년	2025/11/21 ~ 2025/12/19	초등학교	2025.10.23
6730	초교사	5,6학년	2025/11/20 ~ 2025/11/21	초등학교	2025.10.22
6729	초교사	3-2	2025/11/19 ~ 2025/11/19	도초	2025.10.21
6728	초교사	5,6학년	2025/11/17 ~ 2025/11/18	초등학교	2025.10.20
6727	초교사	체육전담	2025/11/10 ~ 2025/11/10	초등학교	2025.10.17

자료: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s://cwedu.gne.go.kr/cwedu/na/ntt/selectNttList.do?mi=9928&bbsId=3753&area=CW> (2025. 11. 11, 인출).

4.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및 교과전담교사, 중등학교의 순회교사 제도 고찰을 바탕으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초등학교는 2013년부터 교직원 배치를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의 규모·여건을 반영하여 탄력적 기준을 마련해왔다. 유치원도 지역규모, 유아 수, 유치원 유형 및 학급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여 유연한 기준 설계가 필요하다. 이때 초등학교의 교장, 교감, 담임교사에 관한 사항처럼 원

장과 원감,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전국 공통 기준을 정하고 보직교사, 전담교사 등에 대해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처럼 학기 중 학급 증가나 전보 등의 상황에 대해 지역별 기준을 제시하였듯이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별도로 제시가 가능하며, 초중고 통합학교나 분교 등 인구감소에 따른 유치원 운영 형태 다양화 등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배치기준에 파견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어 유아교육진흥원 파견교사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초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는 3학년 이상에 배치되고 있었으며, 특정 교과 교수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교사들의 수업·행정 부담을 분산하고 담임교사의 업무를 경감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음에 주목할 만하다. 즉, 교과전담제는 교과 전문성 강화 정책을 넘어 학교 조직의 업무 조정과 교사의 균무환경 개선을 위한 구조적 장치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유치원에서 전담교사 제도를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동시에 전문성을 가진 교원인만큼 단순 보조가 아닌 명확한 역할·전문성 기반 단위활동 전담 기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수업 역시 교원 전문성에 기반하여 배치하고 유치원 특성에 맞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수업 최소 시수를 정하고 있으며, 영어전담은 심화연수 이수자를 우선 배정하는 등 다양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문성 있는 수업 지도와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유치원에서도 개별 유치원 단위에서 업무분장을 정하더라도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업무와 역할에 대한 일정 범위의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현장의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겠다.

교과전담교사의 배치기준은 학급 수를 기반으로 한다. 서울과 경기 모두 학급당 0.25명을 기준으로 하나, 경기의 경우 3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는 5학급마다 1명 수준으로 배치하고 있다. 유치원 역시 학급 수에 비례하여 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순회교사 제도는 소규모 유치원 지원 모델로 참고할 만하다. 소규모 병설유치원이 다수인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겠다. 순회교사의 소속·복무·여비·수당 등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며, 순회학교장과 소속학교장의 공동 관리, 여비·수당 지급, 그리고 가산점 부여 등을 포함한 우대사항은 유치원 순회교사 도입 시

동일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경상남도교육청의 초등학교 순회 보결전담교사 제도는 정규교원 정원 내에서 전담교사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임시직 또는 기간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유치원 보결 전담제와 차이가 있다. 정규교원 순회체제를 기반으로 할 경우 복무, 여비, 평정 등의 관리체계가 명확히 제도화되어 있어야 한다. 유치원 제도에서는 초등의 사례를 단순히 모방하기보다, 거점(중심)유치원 기반 순회체계를 구축하되, 보결뿐 아니라 수업지원·놀이활동 연 속성 유지 등 복합적 역할 수행, 복무와 경력인정 기준 명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초등의 순회보결전담교사 제도는 유치원 소규모 기관 지원 모델의 행정적 틀과 운영 체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할 수 있으나, 유치원은 이를 바탕으로 유아 발달 특성과 교육과정의 통합성을 반영한 변형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IV

유치원 교직원 배치 사례 및 수요 분석

- 01 시도교육청 의견조사
- 02 유치원 현장 요구
- 03 추가배치교사(전담교사) 운영 사례
- 04 시사점

IV. 유치원 교직원 배치 사례 및 수요 분석

4장에서는 유치원 교직원 배치에 관한 구체적 수요와 운영 사례를 조사하여 유치원 교직원 배치기준 표준안 마련 시 반영해야 할 교사 유형과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 유치원 교원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요 및 구체적 기준에 관한 계획 등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유치원 원감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과 시도교육청의 추가배치교사 관련 자료를 통해 추가교사배치 운영 수요 및 운영 실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리하였다.

1. 시도교육청 의견조사¹³⁾

시도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재 각 지역에서 배치하고 있는 교사 외에 향후 배치가 필요한 지역 실정에 맞는 비담임교사 유형에 대해 조사하였다. 각 교육청마다 확보 가능한 정원이나 시행 계획 수립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특정 수업과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교사에 대한 수요가 많고, 소규모 유치원을 중심으로 보결수업을 지원하는 순회교사를 배치하고자 하는 교육청도 다수 나타났다. 그리고 다문화학교 또는 교육청 정책 사업을 담당하는 교사와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체험교육을 지도할 교사, 누리과정 운영 및 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응답되었다.

가. 전담교사: 일부 수업 및 업무 담당

전담교사에 대한 수요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시되었으며, 이미 시행 중인 2개 교육청을 포함하면 14개 시도교육청에서 요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3) 본 수요조사는 2025. 9~10. 중 실시한 결과이며, 이후 수립한 배치 계획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본 절에서 제시한 지역명은 무선적으로 명명한 것으로, 각 항목별로 지칭하는 교육청은 서로 다름.

명칭이나 세부 운영 기준은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수업 일부와 특정 업무를 전담하는 형태이다. 일반 교사의 주당 수업시간은 누리과정 운영시간인 1일 4~5시간으로 환산하여 주당 20~25시간으로 보는데, 전담교사의 주당 수업시간으로 절반가량인 10~12시간부터 많게는 동일한 양의 수업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배치기준은 단설유치원 중심으로 배치하거나, 학급 수나 유아 수를 기준으로 한다. 2026학년도 교원 정원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조사가 진행되어 실제 배치 가능한 정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D, I, J 교육청은 단설유치원 중심으로 배치하되 I 교육청은 100명 이상, J교육청은 8학급 이상에 원당 1명을 배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나머지 B, C, E, F, G, H, J교육청은 단설과 병설 모두 학급 수나 유아 수를 기준으로 배치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F교육청의 경우 대규모 학급이 많고 이미 방과후과정 담당으로 유사한 역할을 하는 추가배치교사를 운영한 바 있어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하였다. 우선 6학급 이상 단설과 유아 수 100명 이상의 병설유치원에 배치하되, 단설유치원의 경우 학급 수에 따라 1~3명까지 배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E교육청의 경우 방과후과정 담당교사로 배치된 교사를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전담교사로 전환하여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 IV-1-1〉 추가배치교사 수요조사 결과: 전담교사

구분	명칭	배치조건	배치기준	주당 수업시간	비고(역할 등)
A	교육활동 전담교사	충원율 높은 원 우선배치	3학급당 1명	일반 수업시수의 1/2 이상	안전, 생활지도 등 관련 교육활동 담당, 보결수업, 업무지원
B	수업전담 교사	단설유치원, 유아 수 100명 이상 통합유치원 (12학급)	원당 1명	20~25시간	범교과수업, (통합학급) 협력수업 등
C	유치원전담 교사	5학급 이상	5학급 이상 1명	10~15시간	전담교사
D	보직전담 교사	단설유치원	원당 1명	20시간 내외	교무부장, 단위활동수업, 교무학사 업무 (과원에 맞춰 배치)
E	전담교사	3학급 이상	3학급 이상	10시간 이상	2학급 이하는 전담교사 미배치

구분	명칭	배치조건	배치기준	주당 수업시간	비고(역할 등)
F	수업전담 교사	6학급 이상 단설, 유아 수 100명 이상 병설	(단설) 5학급 이하: 미배치 6~9학급: 1명 10~14학급: 2명 15학급 이상: 3명 (병설) 유아 수 100명 이상: 1명	미정	학급 수 산정 시 특수학급 미포함 정원 수급 및 학급 증설, 감축 등에 따라 배치기준 변경, 확대 배치 예정
G	전담교사	원아 수 많은 단설 또는 병설	원아 수 많은 단설 또는 병설	미정	수업 전담
H	전담교사	4학급 이상 단설, 병설유치원	원당 1명	18~21시간 내외(초등전담 교사 배치기준 준용)	유치원 실정에 따라 전담교사 유형 결정하여 운영(예시: 예체능 전담, 생활전담, 상담전담 등)
I	교무업무 전담교사	단설유치원	유아 수 100명 이상인 단설유치원당 1명	10시간	유치원 업무지원을 위한 교무업무 전담
J	교무업무 지원교사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 학급 수 고려(협의중)	협의 중	10~15시간	수업 시간 외 업무 지원 등
K	(가칭)수업 지원교사	8학급 이상 단설	원당 1명	10시간	특정 수업(안전, 생태 등) 지도 및 행정업무
L	누리교육 교사	6학급 이상 (병설)유치원	원별 1명	22시간	해당 (병설) 유치원의 누리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전국 시도교육청 담당자 의견조사 결과임.

나. 보결 지원(순회교사)

다음으로는 순회교사에 대한 수요가 나타났다. 3개 교육청에서 해당 수요가 응답되었으며 M교육청은 5학급 이상 유치원에 1명 배정, N교육청은 단설유치원 3개 이상 지역에 중심유치원을 지정하여 1~2명을 배치하여 단설유치원을 중심으로 한 보결 지원, 그 외 지역에는 지역별 1명을 배치하여 단설, 병설유치원의 보결을 지원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O교육청의 경우 지역별로 1~2명을 배치하여 보결을 지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결전담순회교사의 경우 정규교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부 지역에서 강사 또는 기간제교원을 통해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장기재직후

가가 다시 시행되고, 교사의 휴가 사용에 대한 요구가 높고 실제 사용도 증가함에 따라 보결에 대한 지원 요구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유치원 분포 정도가 달라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지역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배치할 필요가 있다.

〈표 IV-1-2〉 추가배치교사 수요조사 결과: 순회교사

구분	명칭	배치조건	배치기준	주당 수업시간	비고(역할 등)
M	유치원 보결 전담순회교사	5학급 이상 유치원 1명 배정	5학급 이상 1명	15~20시간	유치원교사 병가, 연가 등 급한 복무 시 보결
N	수업지원 전담교사(순회)	단설유치원	단설유치원 3개 이상 있는 지역에 중심유치원을 지정하여 1~2명 배치	20시간	(필수)교사 장기재직 휴가와 복무(연가 등)에 따른 보결 수업 지원
	수업지원 전담교사(순회)	병설유치원	지역별 1명 (천안아산 2명씩)	20시간	(필수)교사 장기재직 휴가와 복무(연가 등)에 따른 보결 수업 지원, 단설유치원 3개 미만인 지역의 단설유치원 순회도 병행
O	수업지원교사 (순회교사)	지역규모, 학급 수, 이동거리 고려	지역별 1~2명	20~40시간	교원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보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전국 시도교육청 담당자 의견조사 결과임.

다. 정책사업 담당

한국어학급을 운영하는 다문화교육정책학교에 대한 교사 배치 수요도 나타났다. 이러한 교사는 일부 지역에서 이미 배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이주배경 유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유아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이나 수업 지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P교육청은 IB PYP(국제 바칼로레아 초등 프로그램) 교육을 적용하는 유치원에 IB프로그램 조정 및 개발, 구현을 지원하는 코디네이터 교사를 추가배치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밖에도 각 교육청마다 교육청 고유의 특색사업을 실시할 경우 이를 실행하는 교사 배치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IV-1-3〉 추가배치교사 수요조사 결과: 기타

구분	명칭	배치조건	배치기준	주당 수업시간	비고(역할 등)
P	PYPC(IB코디네이터)	IB후보학교	월당 1명	12시간 이내	IB학교의 핵심 리더십팀의 일원으로 IB프로그램 조정 및 개발, 구현 지원
Q	한국어수업지원	이주배경학생 재원 유치원	추후 협의	20	이주배경유아 한국어 수업 지원
R	한국어특별학급교사	한국어특별학급 선정 유치원	학급당 1명 배치 예정	15~20	이주배경 유아 한국어 교육 등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전국 시도교육청 담당자 의견조사 결과임.

라. 유아교육진흥원 교사

지역마다 유아교육진흥원이 활성화되고 각종 체험프로그램과 정서·사회·심리 지원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유아교육진흥원에 방문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는 교사에 대한 수요가 있어 각 교육청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에 근거하여 유치원으로 발령 후 파견을 보내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이는 현 법령상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교사로서 근무한 경력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인하다. 그러나 파견근무의 경우 근무기간이 2년¹⁴⁾에 불과하여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 직접 배치를 원하고 있다.

〈표 IV-1-4〉 추가배치교사 수요조사 결과: 유아교육진흥원 교사

구분	명칭	배치기준	주당 수업시간	비고(역할 등)
S	체험교육담당교사	기관당 10명	30시간	유아 체험교육 담당
T	교사	체험원당 7명	20~25시간	유아 체험활동지도(수업) 및 운영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전국 시도교육청 담당자 의견조사 결과임.

제6조의2(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는 경우 유아교육진흥원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유아교육 분야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유아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유아교육진흥원의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유아교육진흥원은 담당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1. 30.]

자료: 「유아교육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2025. 11. 8. 인출.

14)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유아교육진흥원 교사의 경력 미인정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및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근거한다. 해당 규정에서 정한 교육경력 인정 범위에는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등 각급 학교 또는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전임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만 포함되며, 유아교육진흥원은 이러한 경력 인정 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교사로서 체험교육 등을 지도할 경우 교원 자격검정령에 따라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유치원 교원 경력은 승진·전보·보수 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경력 불인정 문제는 향후 전문 인력 확보와 배치 운영에도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한계점을 고려하여 유아교육진흥원 인력을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표 IV-1-5〉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①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 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포함한다)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자료: 「교원자격검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2025. 11. 20. 인출.

〈표 IV-1-6〉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9조, 별표 1

9조(평정대상 경력의 종별과 그 등급) 평정대상 경력은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교육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으로 하되, 그 경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평정대상자의 직위	등급	경력종별
교사	가 경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각급학교 교장·교감 또는 교사(전임강사이상의 대학교원 및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동등급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력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경력

	나 경력	<p>임용권자가 임용하여 전임으로 근무한 강사(대학의 전임강사는 제외한다) 또는 기간제교원(임시교원의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은 해당 교원이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1일 단위(근무한 시간을 8로 나누어 산정하되, 8시간 미만의 나머지는 버린다)로 경력을 평정한다.</p>
--	------	-------------------------------------------------------------------------------------------------------------------------------------------------------------------------------------------------------------------------

자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2025. 11. 20. 인출.

2. 유치원 현장 요구

2절에서는 공립유치원 원감과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직하고 있는 유치원에서의 교직원 배치와 관련하여 겪는 어려움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정리하였다.

가. 개요

심층면담 대상자는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을 고루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학급 수를 다양하게 포함하도록 하였다.

원감은 4~6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 5~12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의 전임 원감 총 9명이다. 이 중 6명은 추가배치교사가 배치된 유치원의 원감으로 추가배치교사의 장점 및 개선점 등을 함께 물었다. 교사는 추가배치교사를 포함하여 혼합연령 1학급 병설유치원 교사 2명과 2~4학급 병설유치원 교사 1명, 단설유치원 5~12학급까지 학급 규모별로 1~2명씩 총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면담내용은 1) 현행 교직원 규모와 교사의 업무량 적절성, 2) 유아교육 질 향상을 위한 전담교사 필요성과 배치기준 및 주당 수업시수, 3) 영양·보건 인력 배치 현황 및 관련 어려움, 4) 배치기준 표준안 마련 시 필요한 요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추가배치교사가 이미 배치되어 있는 유치원의 원감과 교사를 대상으로는 추가배치교사의 역할 및 운영 방식, 추가배치교사의 긍정적인 측면과 어려운 점, 학부모 만족도,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유치원 규모, 유형, 교직 구성에 따라 교원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전담·지원 교사에 대한 구체적

인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나. 추가배치교사 필요성

1) 과도한 행정·교무 부담

공립유치원 교원의 업무 과중에 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심층면담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이 드러났으며, 특히 보직교사에게서 두드러졌다. 담임교사와 함께 보직교사를 맡는 경우 근무시간 내 업무 처리가 어려워 잦은 야근과 격무에 시달리며, 수업 준비에 차질을 겪는다고 하였다.

교무가 맡고 있는 그 업무량도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은 되게 많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집에 와서까지 일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뭐 학급 운영이나 이런 거에 시간을 쏟을 만한 에너지나 시간적으로나 그게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수업 대 업무 비중을 나누자면?) 업무를 10으로 보면 수업은 1? (교사 5)

교무부장은 제일 업무량이 많은 보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후수업 들어가면서 사실 지금 오전에 4시간 업무를 하고 있지만 4시간 중에서도 점심시간 지원하는 거 빼고 현장학습 지원하는 거 빼고 하면 사실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시간이 확보되는 거는 사실 좀 어렵고 집에 가서 한다든지 야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 1)

솔직히 단설 6학급에 교무부장을 겸하면서 수업까지 병행하면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그리고 뭐 지금 뭐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은 수업하고 업무하고 병행을 잘하지만 또 이렇게 병행이 잘 안 되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 수업이 약간 좀 등한시되는 경우도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원감 2)

아무래도 행정적인 업무도 많이 하고 전체 교무 학사와 관련해서 유치원 전반적인 교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담임을 병행하면서 그 업무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 또 수업 결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담교사로 부장교사를 한 명 배치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원감 3)

2) 병가, 연차 사용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

유치원 교사의 병가, 연차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유치원 현장은 잦은 수업 결손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예고되지 않은 휴가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방과후과정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방과후과정 담당 교사의

경우 유치원교사 자격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교육과정 결손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수업 결손도 그렇고 어떤 그 안에 초등학교는 전담교사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 보결수업 같은 것도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결수업에도 굉장히 지장이 많고 또 요즘 선생님들이 개인 복무(휴가)를 굉장히 많이 내세요. 그래서 아이들 수업 결손에 따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감 3)

방과후전담사가 일반교사 수업보결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방과후전담사도 (중략)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있는 반면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전담사로 다 이렇게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수업지원교사나 교무가 전 담교사로 배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감 2)

교육청에서 기간제교사나 강사를 채용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력을 활용해 수업 결손에 대처하고 있었으며, 실제 활용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다만 기간제교사나 강사 모두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므로 지원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역 내 교사 인원 수를 고려하여 채용하고 있으나 이용하려는 시기에 따라 충분한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유아들에게 낯선 외부 인력보다는 내부의 교사가 보결 수업을 지원하는 것이 안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OO에서는 각 시군별로 수업지원교사를 배치하고 있거든요. 수업지원교사를 작년까지는 기간제 교사를 배치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10달에서 수업지원강사로 배치를 하고 있어요. (중략) 각 시군별로 해서 좀 교사수가 많은 곳에서는 2명을 배치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작거든요 유치원 수가. 그런 경우에는 우리랑 인근 군을 이렇게 합쳐서 수업지원교사를 한 명을 배치해요. 이거는 단설유치원에 거의 이제 배치가 돼 있거든요. 수업 지원 요청을 하면 지금 수업 지원하고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원감 2)

저희는 교육청 단위별로 보결 전담강사가 한 명 지금 다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결 신청 사이트에서 저희 교사들이 해당 날짜에 신청을 하는데 사실 많이 부족하기는 해서 원내에 보결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있거든요. (교사 1)

보결 위한 순회교사 저희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추가배치교사를 만약에 더 준다면 그거를 단설에 준다면 중고등학교의 순회교사처럼. 이 사람이 인근에 어느 이렇게 권역으로 뭉어진 어느 어느 이제 도서벽지 가까운 데 거기에 순회교사로 같이 그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원감 4)

유치원은 저희도 유아교육지원센터라고 이름을 붙여서 8시간 기간제 교사, 그리고 4시간 기간제 교사 2명을 써서 교육과정하고 방과후과정에 보결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단

설유치원 병설유치원 8학급 이상인 곳에 업무전담교사가 생기니 병설 위주로 나갈 수 있고. 이런 부분에도 좋고. 이게 근거가 마련이 되면 좀 순회교사 차원처럼 정식교사 TO로 교육 청에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원감 6)

지원청에서 보결수업으로 오는 것보다 3, 4, 5세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항상 유치원에서 교과로 수업을 했던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보결을 해 주기 때문에 애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숨은 거죠. 숨어 있는 결원 발생 보결수업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를 이제 재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원감 6)

다. 방과후과정 교사

방과후과정 담당교사를 정규교원으로 배치하는 문제는 면담 대상 교사들 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에 정규교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장기적으로 방과후 교사의 역할과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다.

우선 일부 원감과 교사는 방과후과정에 교육적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기계약직이나 단시간 인력보다 정규교원 중심의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는 장시간 기관에 머무르는 유아에게 돌봄뿐 아니라 교육적 경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정규교원의 방과후 담당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과후 교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유보통합도 된다 그리고 사실은 뭐 24시간 돌봄도 어딘가에서 지금 어린이집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이사이 공백을 많은 계약직들이나 무기계약직들이나 이렇게 채우는 것보다는 100% 보육이고 보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애들이 오랜 시간 이런 기관에 있으면서 교육적인 뭔가가 되려면 정규 선생님들로 거의 다 전환돼야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당 유치원의 방과후과정 교사 자원에 대해) 두 분 다 희망하셨어요. 두 분 다 약간 고경력자셔서 방과후를 둘 다 희망하셨어요.(교사 2)

일단 제가 교무부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전에 업무시간 확보가 필요해서 방과후과정을 지원해서 맡게 됐어요. 사실 저희가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라고 2월에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하기는 해요. 그리고 희망 원서를 받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희망 원서 기준으로 해서 저희 교원 인사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배치는 되기는 하는데 선생님들 지금 배치된 걸 보면 사실 고경력자들이 많이 배치가 되긴 했어요. (교사 1)

방과후과정 정규 교원 배치 시 저희들은 일단 업무 희망을 먼저 받아서 하고 있는데 단설이다 보니 저희들은 저경력 교사, 중간, 고경력 교사까지 있어요. 30년, 35년 넘는 교사들이 있는데 고경력 교사들이 이제 방과후를 담당하시고 희망을 일단 업무 분장에 희망을 하셨거든요. 일단 배치를 하고 나니까 업무 분장에는 무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요. (원감 2)

반면 다른 교사들은 방과후 정교사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축소되어야 할 역할이라고 보았다. 방과후 시간에는 특성화 프로그램이 많아 단위 시간이 세분화되며, 이는 교사가 주도하는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정규교원이라면 본래 교육과정 교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므로, 방과후 전담교사 제도의 확대보다는 점진적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소멸돼 가는 자리가 맞는 것 같아요. 교사 입장에서 방과후 정교사는 교육과정 교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배려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방과후 시간에는 특성화 활동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특성화 활동 때문에 단위 시간이 쪼개지는 바람에 교사가 주도할 수 있는 놀이 중심 수업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시간 한계가 있어서... 교사의 전문성 전문적인 교사를 선발을 했으니까 그런 전문적인 교사들을 활용하기에는 교육과정 교사로 가고 방과후 정교사는 점차 소멸해 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요. (교사 3)

방과후과정의 경우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고경력 선생님도 담임을 맡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뭔가 이게 방과후에 이게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선생님들이 이런 프라이드라든가 이런 나는 담임을 해야 되는데 왜 못하나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신규교사들은 신규 교사 나름대로 굉장히 현장에서 펼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온 사람한테 “방과후 하세요” 하면은 굉장히 좌절하시거든요. 그래서 서로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사람들 이 다 맡고 이후에 발령 받아서 오시는 새로 들어 전입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 순서에 의해 서 할 수 없이 떠맡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저희는 많이 발생하고요. (원감 3)

학급 수 감소로 인한 과원 발생이 방과후 정교사 제도의 운영 현실과 직결되는 문제로 언급되었다. 앞으로 학급 축소가 심화될 경우 정규교원 중 일부가 방과후로 발령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교사의 업무형평성과 근무여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방학 중 연수권 보장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 제도 운영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지금 학급 수가 감축이 되면서 과원이 생겼잖아요. 어쩔 수 없이 방과후로 이제 발령을 내야 되는 상황이 곧 도래할 것 같아요. 이제 몇 년 안에 이제 학급 수가 계속 줄고 있는 상

황이어서 이 과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방과후라서 여름방학도 겨울방학도 없이 이렇게 지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 그럼 선생님들을 41조로 보장해줘야 되지 않냐 자기 연찬의 시간을 이 선생님도 분명히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난감해하긴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 방학 때 인력에 대한 예산이 또 추가가 되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교육청 내에서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감축이 되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방과후로 가게 되겠네 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교사 6)

방과후과정에 대한 정규교원 배치에 관한 의견은 지역 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방과후과정 담당에 대한 정규교원 배치에 관한 사항은 교사 수급이나 교사 편의가 아닌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의 측면에서 여러 사안을 함께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라.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어려움

1) 교사 1인이 모든 걸 담당

소규모 병설유치원에서는 담임교사가 사실상 모든 역할을 혼자 담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유치원 관련 업무 전반을 교사 혼자 전담하고 있으며, 오전 시간에는 교육과 돌봄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감당해야 한다고 반복하여 언급하였다. 방과후전담사가 배치되어도 근속이 불안정해 자주 교체되거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등원부터 급식지도, 기본생활지도, 상담까지 단독으로 운영하는 상황이 빈번하다고 하였다.

저희가 한 학급인데 빨리 행정 처리를 해야 될 때, 예를 들면 행정실에서 공문서를 보고서는 해달라고 해야 될 때 교실로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럴 때 제가 수업을 하다가도 전화를 받아야 되는 상황도 많이 있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조금 있을 때 주변의 도움을 받기가 사실은 너무 어려워서 혼자 한 학급을 운영하면서 행정 업무랑 이렇게 도맡아 하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중략) 교육과정 시간에는 제가 도움을 받는 인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제가 화장실을 가거나 이런 부분 간다고 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인력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교사 3)

정말 저도 이 선생님처럼 온전히 저 혼자서 오전시간에는 점심시간 지나고 1시까지는 이제 제가 혼자서 아이들을 이제 교육하고 돌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많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교사 4)

유아 모집도 교사의 주요한 부담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경우 학생 수 확보가 곧 유지·폐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사가 직접 지역 홍보 방안을 고민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아 감소로 인한 압박감이 크고, 유아 모집 관련 행정도 교사가 도맡아야 해 심리적 부담이 가중 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아 모집 시즌이다 보니까 입학 상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 오전 중에 문의가 왔을 때에는 이제 제가 그 전화를 처리할 수 없으니까 연락처를 받고 이제 오후에 처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수업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처리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사 3)

대체교사 확보 또한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대체 교원 자체를 구하기 어렵고, 방학 중 운영 인력 마련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로 인해 유아가 있는 시간 동안 교실을 비울 수 없어 교사가 개인적 인 사정이나 연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 큰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저희는 대체 선생님 구하기가... 저희도 시골 농어촌에 있는 지역인데 대체 선생님 구하기도 너무 어렵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인력을 구하기도 운영 인력을 구하기도 너무 어려워서 그런 어려움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교사 4)

마. 병설유치원의 초등 행정직원 겸임에 따른 어려움

행정 업무도 교사 업무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었다. 학교 행정실이 유치원 업무를 본래 업무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협조가 원활하지 않고, 교사는 공문 처리와 예산 집행, 지출 결의, 유아학비 정산, 추가경정 예산 처리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한 공사나 시설 수리와 같은 업무도 담당자 없이 교사가 업체를 찾고, 견적을 비교하고, 자재를 고르며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해 학교와 유치원 간 협업 구조의 미비가 드러났다.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의 행정지원 차이에 관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설유치원은 행정실이 오로지 단설유치원만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협조적일 때는 협조적이고 유치원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학교는 유치원을 약간 번외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항상 저희가 부탁해야 된다는 느낌. 그러니까 (통합)행정실 같은 경우에 초등 일은 그냥 본인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유치원은 약간 좀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행정실하고 관계나 업무 지원 관계가 굉장히 풀어나가는 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사 7)

특히 초등학교 행정직원 배치 시 유치원의 학급 수를 고려하여 추가배치가 됨에도 불구하고, 겸임 구조 상에서 유치원은 실질적인 행정 업무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였다.

유치원이 3학급이었는데 이제 8학급으로 이제 바뀌면서 추가 행정 인력이 한 명이 추가 배치가 되었어요, 초등에서. 그렇게 되면 어쨌든 유치원이 커지면서 행정 인력이 추가 배치되면 유치원에 있는 행정과 관련된 유아 학비라든지 이런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당연히 해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초등 행정실에서 하는 얘기가 유치원 때문에 추가 배치가 된 게 아니고 초등학교 자체적으로 봤을 때 학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 배치가 된 거기 때문에 유치원만을 위해서 학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처리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교사 3)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실 품의는 다 제가 올리고요. 원인행위를 하거나 주문을 하는 정도는 행정실에서 해주는데, 또 이제 물건이 와서 검사, 검수는 또 제가 다 해서. 나머지 진짜 예산을 편성하고 그걸 지출하고 추가 경정을 하고 이런 것도 다 제가 혼자 관리를 다 얼마 남았고 어디에 얼마 써야 되고 그런 거는 다 제가 가서 행정실장님에게 상의를 해서 ‘이렇게 옮겨주세요’ 까지도 다 제가 항상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유아 학비도 제가 오롯이 다 계산을 해서 (중략) 유치원이라고 하면은 유치원교사가 해야 한다고 하시고 저희는 인력을 대체 인력을 구할 때도 그냥 유치원 업무 유치원 관련된 거는 또 제가 계약서도 써야 되고 면접도 봐야 되고 (중략) 강사를 구한다거나 대체 인력을 구한다거나 하는 것도 행정실장님께서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 도움을 받지만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제가 다 해야 되는 업무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도움이 된다고는 저도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교사 4)

이처럼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인력과 행정 지원이 줄어드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법령·행정·예산·안전·시설·급식 등 필수 업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 결과 교사는 교육활동 외에 감당해야 할 일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수업의 질과 교사의 전문성 발휘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추가배치교사(전담교사) 운영 사례

가. 개요¹⁵⁾

일부 시도교육청은 추가배치교사 중 하나인 전담교사¹⁶⁾를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다. A교육청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지 않고 교사를 추가배치하여 유치원 사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B교육청은 추가배치(수업전담)교사라는 이름으로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가장 최근 해당 제도를 도입한 C교육청은 업무전담(지원)교사라는 명칭으로 특색수업과 업무, 그리고 보결수업을 지원하는 교원을 배치하고 있다. 각각의 제도는 명칭이나 도입 시기, 주당 수업시간 등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담임을 맡지 않고 일정 수업을 담당하며 업무를 전담(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는 큰 틀은 동일하다.

〈표 IV-3-1〉 추가배치교사(전담교사) 운영 개요

구분	명칭	역할	배치기준	주당 수업시간	비고
A	-		3학급 이상 1명 (1순위 단설, 2순위 학급 수대비 유아 수 많은 곳)		
B	추가배치 (수업전담) 교사	수업,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11학급 이하 단설, 유아 100명 이상 병설: 1명 12~17학급: 2명 18학급 이상: 3명	20시간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C	업무전담 (지원)교사	특색수업, 교원 결원 발생(1개월 미만의 특별휴가, 병가, 연가, 출장 등) 시 보결	(단설) 8~20학급 1명 21학급 이상 2명	12시간 (1시간=40분) 내외	20시간(1시간=40분) 이상 수업 시 보결수당 지급 기금적 부장업무 담당자 배치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전국 시도교육청 담당자 의견조사 결과임.

A교육청은 2018년도부터 유치원에 교사를 추가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5) 추가배치교사 사례에 관한 내용은 각 지역 시도교육청 담당자가 제출한 자료 및 각 지역 유치원 원감, 교사 면담, 그리고 교육청 하달 공문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결과임.

16) 추가배치교사의 정식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여기서는 임의로 전담교사로 통칭하여 정리하였음.

2025년 현재 38명이 배치되어 있다. 이 지역은 명칭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3학급 이상 단설유치원과 학급수 대비 유아수가 많은 병설유치원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으나 교원 수급 상황에 따라 우선 감축 대상이라고 명시하여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로 단위활동 수업을 담당하며 교육청에서 정한 주당 수업시간은 15시간 내외이다.

B교육청의 추가배치(수업전담)교사는 교원의 미발령 과원 문제 해결과 방과후 지원 인력 필요성에 따라 2018년도부터 추가배치교사 제도를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지침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이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며 정착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치기준 역시 조금씩 변경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1학급 이상의 단설이나 유아 수 100명 이상인 병 설부터 학급 수에 따라 1~3명까지 배치되었으나 2025년에는 18학급 이하 모든 공립유치원에 1명, 19학급 이상 2명을 배치하여 143명이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업무분장은 유치원장 권한이나, 교육청 차원에서 방과후과정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주당 수업시간을 제시하여 소속 유치원 교사의 수업시간에 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C교육청의 업무전담(지원)교사는 2024년부터 도입되었으며, 2025년 현재 22명이 배치되어 있다. 8학급 이상 유치원에 배치하며, 8~20학급은 1명, 21학급 이상은 2명 배치된다. C교육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1시간을 40분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수업시간과 보결 시간을 산정한다. 주당 수업시간은 20시간으로 정하고, 이 중 특색수업 12시간, 나머지는 보결 수업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20시간까지는 보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이후 발생하는 보결에 대해서만 보결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가급적 부장업무 담당자를 업무전담(지원)교사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나. 운영 실태 및 개선 요구사항

1) 역할

전담교사는 대체로 수업과 일부 업무 전담, 그리고 보결 지원이 주요 역할이며 그 외에 원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청에서는

주당 수업시간과 업무 범위를 대략적으로 제시하고 전담교사가 담당하는 구체적인 수업과 업무 범위는 유치원 단위에서 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어떠한 역할을 할지, 특히 수업과 관련한 부분은 교사의 개인적 전문성, 유치원장의 교육 철학, 유치원 운영방침 등에 따라 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어떤 유치원에서는 음악·문화예술 영역에 강점을 가진 교사를 전담교사로 배치하여 악기 활동을 중심으로 한 특색 수업을 운영하는 반면 또 다른 유치원에서는 그림책을 활용한 문해력 수업을 전담하고 있었다. 여러 연령을 대상으로 수준을 달리 해 수업을 구성하는 방식이 운영되고 있었다.

제가 음악에 관심이 많고 악기를 잘 다루는 부분이 있어 처음 비담임을 맡게 됐어요. 지금은 1학년은 리듬악기, 2학년은 실로폰, 3학년은 오카리나를 접목해서 운영하고 있고, 수업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도 높아서 계속 같은 영역으로 4년째 전담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 8)

저희는 6학급이라 추가배치교사는 한 명이고, 처음부터 책 수업으로 정해져 내려왔어요. 하나의 책을 가지고 연령별로 수준에 차이를 두어 수업을 하는데, 여러 연령을 담당해야 하다 보니 어린 교사들이 맡기에는 부담이 커서 관심은 있어도 지원은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교사 9)

IV

주당 수업시간은 15~20시간 내외로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운영 방식은 차이가 있다. 최근 전담교사를 도입한 C교육청이 가장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당 수업시간을 1시수를 40분으로 정한 후 20시수로 정하고 있다. 이 중 특색수업을 12시수 운영하고, 나머지 시수는 보결수업 지원에 우선 배정하며, 보결을 포함한 총 수업시수가 20시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한해 보결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B지역에서는 전담교사라 하더라도 다른 교사와 동일하게 주당 20시간의 수업시간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원맞이·급식지도 등 생활지도 시간도 수업 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희도 수업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은 수업을 들어가고... 나머지 아침에 등원 맞이를 한 시간, 급식이랑 하원지도를 한 시간을 포함해서 하루 4시간, 주당 20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어요.(교사 8)

A교육청은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최근까지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현장의 혼선과 유치원 간 편차가 커져 최근 주당 15시간으로 주당 수업시간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의 경우 교무부장 등 업무량이 많은 보직교사가 전담교사를 함께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희망원서를 기반으로 원내 협의회를 거치는 등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업무의 숙련도와 수업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고경력자가 담당하는 것이 다수이다.

업무 분장할 때 희망서를 받잖아요. 근데 거기에 쓰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그걸 다 검토를 해보면 비담임을 쓰시는 분은 없어요. (교사 8)

B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청 지침에 따라 방과후과정 업무를 전담하고 있었다. 방과후부장이 전담교사를 겸할 경우 오전 시간대에 방과후 전담사·시기간제교사와의 소통이 용이해 운영 효율성이 높다고 하였고, 교무부장인 경우에도 담임을 겸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 수행이 보다 원활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형태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원장선생님과 원감선생님께서 교무와의 소통이 많다 보니, 수업 비중이 조금 적은 사람이 운영상 더 낫다고 판단하셔서 교무업무와 전담수업을 함께 맡도록 묶으신 것 같아요.(교사 11)

다만 전담교사는 교무와 유치원 운영 전반을 이해하고 추진할 역량이 있는 교사가 맡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중요하며 수업 진행 역시 여러 연령의 수업을 맡게 되는 현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고경력자가 적합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보결업무 그리고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지원 들어가고 있고요. 요즘에 경계선에 있는 유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학급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권보호를 위해서 문제 행동을 하는 유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저와 원감선생님이 같이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업무도 하고 있고. 등원 맞이라든가 아니면 급식할 때 저희 아이들이 많아서 그 급식 아이들 잘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하고 있고 하원할 때도 안전하게 하원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계단이나 이런 데 또 이동하는 중간 중간에 그럴 때 지원도 제가 하고 있어요. (교사 8)

가급적 부장이 해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업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해야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맡으면 물어보느라 시간이 다 가고, 정작 일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교사 2)

어린 선생님들이 관심은 있는데 이게 여러 연령을 들어가야 되다 보니... 저희는 그림책이라 하나의 책을 가지고 수준별로 차이를 해서 연령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선생님들이 이 하시기엔 조금 힘드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관심은 있지만 아무도 자원은 안 하세요. 그래서 저만 자원해서 제가 이제 추가배치업무를 맡게 됐고요. (교사 9)

2) 긍정적인 면

가) 업무부담 경감

전담교사 도입의 가장 큰 장점은 업무 부담 경감이다. 보직교사가 한 학급을 담당하고 보직업무를 함께 수행 시 초과근무가 불가피하고 수업의 질도 떨어지던 상황에서 담임을 맡지 않고 전반적인 업무 부담이 줄었다는 평가이다. 담임교사의 입장에서 전담교사의 업무 전담으로 담임교사의 부담도 줄었는데 업무의 부담 경감과 함께 수업의 일부를 전담교사가 담당하며 해당 시간을 업무 처리에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점으로 언급되었다.

제가 수업을 들어가고 또 등원 맞이도 관리자 분들을 지원해서 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추가되는 인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다른 선생님들의 업무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유치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사 8)

선생님들도 제가 수업하시는 동안 그래도 잠깐 쉬시는 잠깐 한 템포 쉬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거는 조금 좋은 것 같고요. 행사할 때도 어린 반은 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 아무래도 원감선생님이 도와드리는 건 조금 부담되시기 때문에 교사들이. 그래도 같은 교사인 제가 도와드리는 걸 좀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교사 9)

나) 교육의 질 향상

전담교사가 유치원 특성에 따라 단위활동 수업을 전담함에 따라 수업의 질도 향상된다는 의견이다. 유아교육의 특성 상 여러 영역의 활동을 연계하여 수행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명의 담임교사가 모든 영역의 활동을 심도있게 지도하기에는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담교사가 특정 활동 영역을 중심으로 수업을 담당할 경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업 준비와 실행이 가능하며, 이는 전반적인 교육의 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추가배치교사가 있어서 좋은 점은 일단은 수업이 조금 더 심도 있게 하나의 활동을 가지고 옛날로 말하면 1수준, 2수준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담임 선생님들이 뭔가를 준비하실 때는 너무 업무 준비할 게 많은 것들은 좀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를 가지고 준비를 하니 조금 더 손이 많이 가는 것도 그래 우리 아이들이 다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많이 준비할 수 있게 되니 아이들이 굉장히 수업을 좋아해요. (교사 9)

다) 보결수업 안정성 확보와 교사의 근무여건 향상 및 만족도 제고

최근 변화된 근무환경으로 교사의 연차, 공가 사용이 늘어나며 수업 결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교육청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교육청 소속의 기간제 교사 및 강사 등 비정규 인력을 활용하여 대처해 왔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고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결손을 지원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전담교사 배치로 인해 시급한 결손에 대비할 수 있었으며 장기적으로는 교사의 근무 여건 향상 및 만족도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는 유치원 내에서 보결수업이 필요한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마다 이제 교육지원청의 도움 없이 이제 제가 있으니까 조금 편안하게 내부 인원으로 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특히 저희가 경조사 휴가, 공가 등을 이용하는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지원청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무전담교사가 있어서 그런 일이 없어지면서 좀 선생님도 편안하게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면서 조직 내 구성원들의 사기가 좀 짐작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10)

라) 학부모 신뢰도 및 만족도 상승

전담교사의 단위활동 수업 지도는 학부모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한다.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전담교사의 수업 지도를 학부모에게 알리고 있었으며, 학부모 역시 수업 진행에 대해 인지하고 높이 평가한다는 의견이다. 특성화프로그램과 달리 유아 교육 전공자의 수업 지도가 유아를 잘 이해하고 발달 수준에 적합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학부모 만족도 상승에 기여한다.

특성화프로그램은 유아교육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는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수준과 발달을 다 이해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만족감이 좋으시고 (교사 8)

그리고 저희는 업무전담교사로 인해서 긍정적인 면은 첫 번째로는 저는 이제 그림책 문해력 수업을 담당하면서 아이들 수업을 조금 내실 있고 놀이 위주로 연속성 있게 운영할 수 있어서 학부모 만족도도 굉장히 좋고 (교사 10)

3) 개선 요구사항 및 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

가) 명칭

현재 여러 시도에서 전담교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일된 명칭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최근에 제도를 도입한 C교육청의 경우 ‘업무전담(지원)교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정책적 일관성 확보를 위해 공통된 명칭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전담교사’, ‘놀이전담교사’, ‘수업지원교사’ 등 다양한 명칭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그중 ‘전담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정 단어를 전담교사 명칭 앞에 부여할 경우, 자칫 업무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본 명칭은 ‘전담교사’로 설정 되되, 구체적인 역할과 운영 방식은 각 교육현장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정리되었다.

전담교사 좋아요. B지역이 추가배치교사라는 용어를 썼던 이유는 그야말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전담이란 말을 못 썼던 거여서 괄호 열고 수업전담교사 그렇게 본문에 왔었거든요. 이게 근거가 이제 된다면 지금 여러 원감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의 본연의 업무인 수업을 강조하는 수업을 도와주고 수업의 질을 높이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한다면 수업전담교사도 괜찮을 것 같고요. (원감 5)

저는 앞에 수식어구가 붙는 거는 다 반대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수식어구가 붙는 순간 업무가 되게 제한점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전담교사라는 표현, 그렇지 않고 지원, 업무, 수업 이러는 순간은 이제 좋은 취지로 시작한 이 제도가 다툼과 갈등의 시작이 됩니다. (원감 1)

나) 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

추가배치교사 운영 시 일정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구체적인 업무 분장은 단위 유치원에서 하되 교육청 차원에서 지침을 주어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A, B 지역은

도입 초기 추가배치교사 배치기준 인원만 제시되어 있고 명칭·정의·역할·주당 수업 시수 기준 등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마다 운영 방식에 큰 편차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명확한 지침과 업무 범위는 제도 성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지역에서는 2024년 도입 시 구체적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해당 업무 기피가 심각했으나 과도기를 거치며 현재는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들 다 빼고 진짜 수업에 최소 시수를 좀 넣어줄 때 저는 적어도 이제 시도마다 지금 C지역만 그렇다고 하셨는데 시도마다의 시수에 대한 생각을 좀 교육부가 먼저 제안을 전체 다 몇 분으로 해라 이렇게는 안 해도 적어도 이 추가배치교사의 수업시수는 한 차시에 몇 분으로 한다, 몇 분 내외로 한다든가 이렇게 조금 주면 시도들도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원감 5)

지금 추가배치교사를 배치하는 기준 인원만 좀 정확하게 나와 있고 명칭이라든가 이런 정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운영에 관한 어떤 방침이라든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경계도 모호하고 그 사람의 역할도 모호하고 그래서 유치원마다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좀 정확한 경계라든가 역할이라든가 방침이 조금 나오면 조금 통일성 있게 운영하지 않을까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냥 유치원 자율에 운영을 맡기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래서 업무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수업시수라든가 최소한 수업시수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명확하게 좀 정리가 되고 명시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사 8)

저희는 항상 이게 그래서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었던 게 저희는 또 이렇게 단설에는 원장, 원감선생님이 계시고 또 이제 선생님들의 또 이렇게 그런 여론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선생님들 불만을 적게 하기 위해서 다 이제 요구를 들어주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보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또 이렇게 과중하게 업무는 업무대로 하고 수업은 수업대로 하면서 약간 이제 협의회를 거쳐서 이것도 겨우 이렇게 조금 조정이 된 부분이에요, 다른 사례를 다 가지고 와서. (교사 12)

관리자 역시 유사한 의견이었다. 어떤 수업을 맡을지에 대해서는 각 유치원에서 정하되 수업 시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4년에 처음 배치되면서 사실 이제 처음에는 업무 전담을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이제 명목은 특색수업을 운영하라 그리고 유치원 내에 보결이 필요할 때 이 분이 먼저 수업시수를 맡을 수 있을 만큼은 보결을 지원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선생님들은 이제 단설의 특성상 유치원에 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특히나 행사나 등하원 시간이나 3월은 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모든 곳에 자기가 동원될까 봐 약간 불안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원감 7)

전담교사의 수업시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최소 수업시수는 나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 것만 정해주고 그분한테 특색수업을 주든 어떤 어떤 하나의 그런 과목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주는 거는 유치원 상황에 맞춰서 결정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소 수업시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좀 교육청 차원에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원감 3)

면담 결과, 전담교사는 수업 시간은 일반 담임교사의 절반 수준이 적당한 것으로 수렴되었다. 활동 중심 수업의 특성상 준비와 진행에 많은 시간과 높은 집중력이 요구되고, 교실 간 이동시간까지 고려할 때 하루 2개 학급 정도를 담당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실제 단위활동 수업이 공식 시수보다 훨씬 긴 시간 투입을 요구한다고 지적하였다.

단위활동 수업을 3타임 이상 하는 것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해보니 2타임 정도가 아이들과 좋은 교육적 질로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고, 그러면 일주일에 10시간 정도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교사 8)

50분씩 2반을 들어가지만 9시에 가서 아이들과 준비하고, 수업 마무리도 시간이 더 걸려서 거의 2시간을 풀로 수업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뒤에는 급식지도까지 돋다 보면, 겉으로 보면 2시간 수업이지만 실제 수업시수로 따지면 훨씬 많은 시간인 것 같아요. (교사 9)

IV

관리자 역시 주당 20시간을 모두 단위활동 수업으로 채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았다. 생활지도 역시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이를 수업시간에 포함하여 교무업무를 병행하기에는 부담이 크므로, 단위활동 수업만을 기준으로 주당 수업시수를 산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실질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B지역 기준이 20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C지역처럼 15시간 정도로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담임과 똑같이 수업을 하면 전담교사로서 의미가 없고,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한 수업시수를 기준으로 정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원감 4)

또 다른 원감은 업무전담교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수업 시수 상한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저는 실질적으로는 한 15시간이나 이렇게 시수를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처음에도 저도 말씀드렸지만 (담임)교사들하고 똑같이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담교사로서

의미가 없거든요.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수업시수는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원감 4)

실제 현장에서는 보결수업 지원을 전담교사의 주요 역할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었으며 전담교사가 즉시 보결을 담당함으로써 현장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긍정적이나 잣은 보결로 인해 전담교사가 계획한 단위활동 수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도 보고되었으며 교사의 전문성과 고유 역할 침해라는 의견도 나타났다.

보결을 할 때 그림책 수업을 어떻게 먼저 우선을 끌어야 되나 보결을 먼저 끌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 (교사 11)

보결이 먼저 생기면 그림책 수업이 계속 미뤄지는 경우가 생겨요. 요일마다 들어가는 반이 정해져 있는데, 특정 요일에 보결이 자주 생기면 계속 빠지는 반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이나 한 달 단위로 평균이 맞도록 반을 조정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교사 11)

저는 보결업무라는 게 어떤 표준안이나 기준에 들어가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추가배치교사가 있어서 갑작스러운 이제 요즘에 정말 가족돌봄휴가 뭐 이렇게 막 가시잖아요, 병원진료도 가시고. 그럴 때 1시간, 2시간에 갑작스러운 이런 일들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이분들도 본인 고유의 수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업을 빠지고 사실 보결을 들어가거나 이게 사실은 적절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 온종일 빠지는 게 예약돼 있는 거는 보결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당연히 방과후 보결이 됐어도 똑같이 교사가 이제는 돌아가는 거지 이 추가배치교사가 방과후를 더 들어가지는 않고요. 갑자기 예견되지 못한 시간강사를 구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은 있지만 예견된 하루 이상은 저는 시간강사를 합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그래서 아까 이제는 장기재직휴가나 이런 것들로 해서 추가배치교사가 보결이 고유의 업무라든지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렇게 비춰지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 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원감 4)

이에 따라, 전담교사의 보결 역할은 예고되지 않은 단기 결손 수업에 한정하고, 사전에 계획된 휴가나 1일을 초과하는 장기 결손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체강사를 우선 투입하는 등 전담교사의 수업·업무·보결 역할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4. 시사점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추가배치교사 수요 조사 결과와 유치원 현장의 요구, 그리고 전담교사 및 보결전담인력 운영 사례 분석을 종합해 보면, 유치원 교직원 배치기준 표준안 마련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유치원 학급 수를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는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전담교사에 대해서는 교사와 관리자 모두에게 필요성과 효과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 사례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듯 담임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완화하고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교는 교과 개념이 분명한 반면, 누리과정은 영역별 분리보다는 통합적, 놀이 중심 운영을 지향하므로, 유치원 전담교사는 교과 단위가 아니라 단위활동 중심의 통합적 수업을 전담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명칭을 정할 때에도 이러한 성격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소규모 유치원에는 거점 유치원을 중심으로 순회교사제를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지역별 유치원 분포 및 교사 수를 고려하여 전담교사가 인근 지역의 수업 지원을 병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경우 병설유치원의 인력 구조의 한계와 함께 소인수라고 하더라도 교사 1인이 모든 역할을 맡아야 함에 부담이 큰 것이다. 그렇지만 상시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는 없으므로 유사한 여건의 병설유치원간 순회교사를 도입할 경우 부담이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전담교사의 역할은 단위활동 수업, 업무 지원으로 한다. 또한 주당 수업시간의 범위를 정하고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청 단위에서 일정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이 주요 목적 중 하나이지만, 단순한 인력 보완 차원을 넘어 수업 운영의 일관성과 질 관리가 가능한 시수 기준 및 운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전담교사가 단위활동 수업을 진행할 경우 몇 학급을 담당할 수 있는지를 산정 시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 2개 학급을 넘지 않도록 하고 담임교사와 차등을 둔다.

넷째, 배치기준은 전담교사 1인이 학급당 주 1회 수업을 지원한다고 가정할 때 하루 동안 담당할 수 있는 최대 학급 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이 학급수를 초과하는 유치원에는 2명을 두는 등 규모에 따라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 업무 분장은 학급

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유치원별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결손 관련 특수상황, 유아의 특성 등은 해마다 유동적으로 변할 수기에 원 단위에서 조율할 수 있다.

다섯째, 보결수업의 운영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보결은 예고되지 못한 단기 결원 중심으로 하고 1일 이상의 장기 결손의 경우에는 별도의 대체강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결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을 제시하여 시도 간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일부 시도에서 이미 전담교사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지역별 유치원 수, 학급 수, 이용 원아 특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큰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지역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도입 초기에는 기존과 다른 운영 방식으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치원별 상황을 고려하도록 자율을 준 것이 자칫 업무분장의 불명확함으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보다 정밀하게 조율해 가도록 도입 초기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V

유치원 교직원 배치 방안

- 01 법 개정
- 02 유치원 교직원 배치기준 표준안
- 03 전담교사제 운영(안)
- 04 제도 안착을 위한 정책과제

V. 유치원 교직원 배치 방안

1. 법 개정

「유아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시행령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초·중등교육법」의 체계를 고려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제시한 원감 배치에 관한 사항 외에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배치기준에 관한 삭제가 필요하다.

〈표 V-1-1〉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①법 제20조에 따라 유치원에는 원장·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한다. 다만,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②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이란 2학급 이하의 유치원을 말한다. ③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 담당교사 외에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방과후 과정 운영 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④유치원에는 원활한 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유치원 업무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보직교사의 명칭, 종류 및 배치기준 등 보직교사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	제23조(유치원 교원) ①법 제20조에 따라 유치원에는 원장·원감 외에 학급담당교원을 둬다. 다만,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②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이란 2학급 이하의 유치원을 말한다. ③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 담당교사 외에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둘 수 있다. ④유치원에는 원활한 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유치원 업무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⑤삭제
제23조의2(수석교사의 배치기준) ①수석교사는 유치원별로 1명씩 두되, 유아 수가 100명 이하인 유치원 또는 학급 수가 4학급 이하인 유치원에는 수석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수석교사는 학급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치원 규모 등 유치원 여건에 따라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제23조의2(수석교사) ①삭제 ②수석교사는 학급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치원 규모 등 유치원 여건에 따라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③삭제

개정 전	개정 후
<p>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청이 정한다.</p> <p>제24조(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에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 으며, 유치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p>	<p>제24조(직원의 배치기준) 삭제</p>

2. 유치원 교직원 배치기준 표준안

이상의 법 개정을 전제로 배치기준 표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배치기준 표준(안)은 지역교육청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비담임교사 유형을 폭넓게 제안하되, 세부 배치기준은 보수적으로 설정하였다. 제시된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각 시도교육청 교직원 정원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하며, 동일한 조건이라도 현원, 정원 충족률, 유치원 규모, 학급 구성 상황,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이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의 교육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본 표준안에는 대강화의 원칙에 따라 최소 기준을 제시하였다. 각 세부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목적 및 추진배경, 법적 근거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배치기준의 권한이 각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 만큼, 표준안을 제시하더라도 참고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음을 목적에 명시하고 추진 배경과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I. 목적

「유아교육법」 개정(2025.9.19.)으로 교직원 배치기준 권한이 지도·감독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맞는 유치원 교직원 배치기준을 마련·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참고용 표준안을 마련함. 본 표준안의 교직원 배치기준은 지도·감독기관이 정하는 기준의 예시로, 정원 내에서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음.

II. 추진 배경

- 「유아교육법」 제20조 개정(2025.9.19.)

-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배치기준은 지도·감독기관이 정함.
- 「유아교육법 시행령」상 유치원 교직원 배치기준 관련 모든 조항 효력 상실

III. 법적 근거

- 「유아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③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배치기준은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 기관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8.〉 [시행 2025. 9. 19]

*제18조(지도·감독) ①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나. 교원

원장과 원감에 관한 사항은 「유아교육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법령의 기준을 그대로 제시하였다. 수석교사에 관한 사항은 기존 시행령의 규정을 참고하여 기준을 설정하였다. 보직교사에 대해서는 2024년 「유아교육법」 개정 이후 각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인 점을 반영하였다. 앞서 실시한 현황 조사 결과,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보직교사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도별 학급 수 및 운영 여건이 상이하여 구체적인 배치기준을 일률적으로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명칭의 경우 전국적으로 ‘○○부장교사’가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명시하였다.

학급 담당교사와 방과후 과정 담당교사에 관한 사항은 현재 전국적으로 1학급 1담임제를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 과정 교사에게 담임수당을 지급하고 방과후 학급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운영 실태를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학급 담당교사는 학급당 1인 이상으로 하고,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제시함으로써, 각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담교사에 관한 사항은 원감 및 교사 대상 면담과 시도교육청 조사 결과를 토대로 명칭 후보를 도출한 후 협의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하였다. 심층 면담 및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 과정에서 수업지원교사, 수업전담교사, 업무전담교사, 단위 활동 교사 등 다양한 명칭이 제안되었으나, 전담교사 명칭 앞에 특정 업무를 명시

할 경우 교사의 활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명칭은 ‘전담교사’로 통일하되, 각 시도교육청에서 필요에 따라 이를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전담교사의 목적과 역할을 명시하였다. 이는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전담교사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A지역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를 명시함으로써 전담교사가 단순히 수업 시수를 경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지양하고자 하였다. 또한 필요에 따라 인근 유치원의 수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도 활용의 범위를 확대하되, 이는 별도로 명시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순회교사에 관한 사항은 전담교사 배치기준이 학급 규모를 중심으로 설정됨에 따라 소규모 유치원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순회교사 제도를 통해 소규모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교사 정원 확보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배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순회교사 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교원 확보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진흥원 교사에 대해서는 진흥원의 역할 확대와 업무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유치원 교사 배치에 대한 수요와 비정규교원 채용 혹은 정규교원이 파견 형태로 배치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하였다. 다만 파견 근무 방식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파견이 아닌 정규 교원 배치를 통해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사의 역할을 제시한 것은 유치원 교사가 진흥원에 배치 또는 파견되었을 때 단순한 행정·업무 지원이 아닌, 유아교육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현행 법령상 유아교육진흥원 근무 교사의 경력이 교원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실제 교사 배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유아를 지도하는 교사가 교원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영양교사와 보건교사에 관한 사항은, 교사를 배치하거나 공무직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현황을 반영하여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지역별 운영 실태를 고려한 현실적인 인력 운영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IV. 유치원 교원 배치기준

가. 원장: 원장은 유치원별로 1명씩 배치한다.

나. 원감

원감은 유치원별로 1명씩 배치한다. 다만, 2학급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수석교사

수석교사는 유치원별로 1명씩 배치할 수 있으며, 유치원 규모, 지역별 수석교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라. 보직교사

1) 유치원에는 원활한 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에서 보직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마련하여 시행한다.

2)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교사’로 하며,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분장은 유치원의 장이 정한다.

마. 학급 담당교사

유치원에는 원장·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한다.

바. 방과후 과정 담당교사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 담당교사 외에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할 수 있다.

사. 전담교사

1) 유치원에는 교육의 질 향상과 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각 학급 담당교사 외에 전담교사를 둘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지역 여건에 따라 관할청이 마련하여 시행한다.

2) 전담교사는 일정 수업과 업무 등을 담당하며, 구체적인 수업과 업무분장은 유치원의 장이 정한다.

3) 전담교사는 같은 교육지원청 내 인접한 유치원의 수업을 지원할 수 있다.

아. 순회교사

유치원 교원의 적정한 배치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둘 이상의 인근 유치원을 순회하면서 유아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순회교사 정원 내에서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다.

자. 유아교육진흥원 교사

유아교육진흥원에는 유아의 체험교육, 유아의 정서·심리 상담, 학부모 상담, 유치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교사를 둘 수 있으며, 별도 계획에 의한다. 교사 배치의 세부 기준은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계획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단, 교사의 유아교육진흥원에서의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교

원 배치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함.

(관련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9조 별표 1).

차. 영양교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른 영양교사 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영양사를 배치한다.

카. 보건교사

유치원에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배치한다.

다. 직원 등

직원은 행정직원과 영양사, 간호사를 중심으로 배치기준을 제시하였다. 행정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관할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본 표준안에서는 구체적 내용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영양사와 간호사에 대해서는 영양교사, 보건교사 배치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제시하였으며, 특정 직종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시도교육청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직원 배치에 필요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이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교직원 배치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V. 유치원 직원 배치기준

가. 행정직원

유치원에는 행정사무와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원을 둘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관할청에서 마련하여 시행한다. 병설유치원은 병설된 학교의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나. 영양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른 영양교사 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영양사를 배치한다.

다. 간호사

유치원에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간호사, 간

호조무사를 배치한다.

VI. 행정사항

교직원 배치 업무 수행 시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학교급식법」 및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과 각 시도교육청의 관련 조례에 따라 시행하며, 본 표준안을 참고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배치기준을 수립한다.

이상의 내용을 반영한 유치원 교직원 배치기준 표준안은 부록 2에 제시하였다.

3. 전담교사제 운영(안)

2절에서 제시한 배치기준 표준안은 참고용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지침이 아니며, 그 내용 역시 각 시도교육청의 지역 여건에 따른 배치 필요성을 최대한 인정하고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안과는 별도로 시도교육청 수요조사 결과와 현장 관계자 면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담교사제 운영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전담교사는 (단위활동 중심의) 수업 일부와 일정 업무를 담당한다. 주당 수업시간은 담임교사의 1/2 수준으로 제안하며, 전담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은 놀이중심, 유아중심 누리과정의 기본철학과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이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하므로 특정 영역을 전담하기보다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안에서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고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업무는 유치원 학급 규모와 교원 배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치원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유치원 내 교사 협의회 등을 통하여 원내 구성원 간 의견 수렴을 통해 정한다. 담임교사의 수업 외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분장하여 전담교사 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치기준은 전담교사의 수업 가능 시간을 고려하였다. 학급 당 주 1회 수업 시 전담교사 1명을 기준으로 하루 2개 학급을 초과하여 수업하지 않도록 8학급까지 1명, 9학급부터 16학급까지는 2명, 그 이상 3명으로 하였으며, 정원 내에서 유아

수, 학급 수(총족률 고려), 혼합연령, 농산어촌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우선 배치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시도교육청별 지역 여건과 전담교사 역할 범위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 1) 명칭: 전담교사
- 2) 역할: 일정 수업과 업무 등을 담당함.
- 3) 주당 수업시간: 담임교사의 1/2 수준
- 4) 업무 분장
 - 유치원은 학급 수와 교원 수를 고려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장하며, 전담교사 배치를 통해 담임교사의 업무 경감을 도모한다.
- 5) 배치기준
 - 5학급 이상~8학급 이하: 1명
 - 9학급 이상~16학급 이하: 2명
 - 17학급 이상: 3명
- 6) 비고
 - 각 지역별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전담교사 역할에 인근 유치원 수업 지원 포함 시 배치기준 세분화 및 확대 필요
 - 우선 배치조건: 유아 수, 학급 수(총족률 고려), 혼합연령, 농산어촌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조정

4. 제도 안착을 위한 정책과제

본 연구는 2025년 9월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맞춰 2026년도부터 교직원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시도교육청이 참고할 수 있는 유치원 교직원 배치기준 표준안 마련을 중심으로 한 연구이다. 이러한 목적 아래 본 연구에서는 공립유치원 교원과 직원 배치에 관한 배치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전담교사, 순회교사, 유아교육진흥원 교사 등 새로운 유형의 추가배치교사를 제안하였으며 명칭과 역할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표준안은 정원 내 적용을 전제로 하며, 각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이를 교사 도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다루지 않았다.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다음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가. 중앙정부

이번 개정으로 각 지역교육청 여건에 맞는 교직원 배치가 가능해졌으나 정원은 교육부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과·부족 여부에 따라 실제 교직원 운용의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과원 해소를 위한 비효율적인 교원 배치는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교원 정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필요한 교사를 배치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교사 배치에 대한 학급 수 규모 기준을 보수적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전담교사, 순회교사, 유아교육진흥원 교사 등 추가배치교사의 운영 효과를 검증하여 정원 확보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순회교사와 유아교육진흥원 교사의 경우 유치원 배치가 아닌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정원 확보가 안정적 제도 운영의 기반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아교육진흥원 교사는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유아교육진흥원을 교원 근무 경력 인정 기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나. 시도교육청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 여건에 맞게 순회교사와 유아교육진흥원 교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정 및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순회교사의 경우 초·중등학교 운영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복무관리 및 여비 지급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요구되며, 수업 지원의 범위와 지원 신청 절차 및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 교사에 대한 평정과 방학 중 근무기준, 유인책인 우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표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전담교사가 현장에 배치되는 초기에는 운영상의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행 첫해에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협의체를 구성, 정기적 운영을 통해 업무 분장, 주당 수업시간, 단위활동 수업의 질 관리 등과 관련한 체계적 분석과 보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담교사와 일반 담임교

사간 수업 시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원 인사 평가상의 쟁점에 대해서도 교육청 차원의 기준과 방향 제시가 요구된다. 이러한 과도기를 통해 전담교사 배치가 누리과정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2025). 2025학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경기도교육청(2025a). 2025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초등·유아).
- 경기도교육청(2025b). 2025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 경상남도교육청(2023). 2023 중등 겸임(순회)교사 운영계획.
- 경상남도교육청(2025). 2025 중등 겸임(순회)교사 운영 계획.
- 경상남도교육청(2025. 1). 2025년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기본 계획(안)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4). 2024 교육통계분석자료집-유초중등 교육통계편.
- 교육부(2025a). 전국 유아교육진흥원 인력 현황.
- 교육부(2025b). 전국 유치원 영양(교)사 배치 현황.
- 교육부(2025c). 전국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현황.
- 교육부(2023. 4. 10).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3). 통계로 본 유초등교육 2003년 제2권.
- 김근진·박창현(2017). 국공립 유치원 행정 지원체계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선혜(2004).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의 학교생활에 나타난 몰입과 소외. 한국교육, 31(4), 27-51.
- 김왕준·신지영·김민규(2024). 미래형 유아교육 실현을 위한 유치원 교사 인사정책 개선 방안 연구. 경인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경기도교육청.
- 김주영·김정희(2023). 공립유치원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및 교무행정지원사 지원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43(2), 79-100.
- 박은정·이인희·김승희(2017). 제주 공립 병설유치원 교사의 수업 외 행정업무 지원 우선순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6), 423-448.
- 백선영·신유리·김건희·오지은·이승민·함선옥(2020). 유치원 설립유형별 영양사의 직무 중요도 및 수행도 분석.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30(4), 274-287.
- 서울특별시교육청(2025). 초·중등 학교급별 교원 배치 기준.
- 신유리·경민숙·함선옥(2022). 직무분석을 통한 유치원 설립유형별 영양(교)사의

- 과업량 및 적정인력 추정.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28(1), 1-18.
- 안혜정·이승연(2018). 유치원 교사의 업무수행 경향성과 업무시간 운영의 실제 및 효율성에 대한 인식. 육아정책연구, 12(3), 3-27.
- 우선영·박효원(2023). 고등학교 교과순회교사의 교과순회 경험과 인식에 관한 연구. 교육혁신연구, 33(2), 215-241.
- 울산광역시교육청(2021). 2021학년도 순회교사제 운영 계획.
- 이경희·김명희·최미경(2013). 충남지역 유치원의 영양사 배치 유무에 따른 급식실태와 학부모의 급식만족도 비교.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42(2), 278-285.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2025. 9). 유치원 추가배치교사(전담교사) 기준 마련 관련 전국 유치원 현장교사 인식조사 결과.
- 전라북도교육청(2021). 2021학년도 1학기 중등학교 순회[겸임]교사제 운영 계획.

〈법령 및 조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2025. 11. 8, 인출.
-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2025. 11. 8, 인출.
- 「교원자격검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2025. 11. 20, 인출.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2025. 11. 20, 인출.
- 「교육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2025. 9. 8, 인출.
-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2025. 11. 8, 인출.
- 「유아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2025. 9. 8, 인출.
- 「유아교육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2025. 9. 8, 인출.
- 「지방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2025. 9. 8,

인출.

「지방공무원 임용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2025. 9. 8, 인출.

「초·중등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2025. 9. 8, 인출.

「학교급식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2025. 9. 8, 인출.

「학교급식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2025. 9. 8, 인출.

「학교보건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2025. 9. 8, 인출.

「학교보건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2025. 9. 8, 인출.

〈인터넷 자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뉴스/소식-인사정보, <https://www.goe.go.kr/goe/na/ntt/selectNttInfo.do?nttSn=1056201&mi=10518>\(2025. 9. 28, 인출\)](https://gwpce.gwe.go.kr/boardCnts/view.do?boardID=1765&boardSeq=7646518&lev=0&searchType=S&searchType2=&statusYN=W&page=3&s=gwpce&m=030602&rvtListYN=N&opType=N&sdate=&edate=(2025. 11. 12, 인출)</p></div><div data-bbox=)

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s://cwedu.gne.go.kr/cwedu/na/ntt/selectNttList.do?mi=9928&bbsId=3753&area=CW> (2025. 11. 11, 인출).

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s://cwedu.gne.go.kr/cwedu/st/sbstTeacher/selectTeacherReqstCalendar.do?sysId=cwedu&teacherSeq=&bbsId=3753&mi=9928&date=&area=CW>(2025. 11. 11, 인출).

교육부 보도자료(2022. 2. 3).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자격기준 규정…배치 근거 명확화 [보도자료].<https://www.korea.kr/news/cultureColumnView.do?newsId=148898648&utm>(2025. 11. 23, 인출)

뉴스1(2023. 10. 17일자 기사). 비전공 과목 가르치는 상치교사와 순회교사 증가…충북 올해 596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113890?sid=102>(2025. 11. 23, 인출)

법제처 홈페이지(2019. 1. 28). 민원인-보건교사를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 관련) [유권해석 회신문]. <https://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csSeq=416275&rowIdx=3>(2025. 11. 23, 인출)

의안정보시스템(2025. 10. 4, 인출). [220651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W2V4V1T2U0Q9O1P4N1O7M5N1U1V0U3

의안정보시스템(2025. 10. 4, 인출). [220540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2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S2B4C0A9Z2X7F1E1F2E1D3Y3X4Y7X5

의안정보시스템(2025. 10. 4, 인출). [212372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J2F3D0C6D2C2K1I1Q1R8Q0P6N1V9W9

의안정보시스템(2025. 11. 12, 인출). [220604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Q2Q4P1Q1X2Y5W1V3V5T5U1C9D3B4B8&currMenuNo=2600044

이금이(2017). ‘초등학교 교과전담제’ 운영현황과 개선 방안. 월간교육 2월호, 72-78. <http://pdf.eduinnews.co.kr/13/1304.pdf>

전북미래교육신문(2025. 10. 21일자 기사). 유치원 교사 98.7% 보건전담인력 반드시 필요: 실제 배치율 30% 미만. <https://edujb.com/news/articleView.html?idxno=6053>(2025. 11. 23, 인출)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홈페이지-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호(https://office.jbedu.kr/jbbae/M01070801/view/6269991?utm_source=chatgpt.com)(2025. 11. 12, 인출).



부록 1. 심층면담 질문지

가. 원감용 심층면담 질문지

유치원 교직원 배치에 관한 현황 및 요구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2025년 수시과제 「유치원 교직원 배치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비담임교사 추가 배치에 관련된 사례 및 건강, 보건 인력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육아정책연구소

※ 본 연구는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직원 배치기준 표준안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의 법령 개정을 참고 하시고, 귀 원의 사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유아교육법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p>제20조(교직원의 구분)</p> <p>①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유치원에는 교원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p> <p>③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교직원의 구분)</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배치기준은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 기관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8.> [시행 2025. 9. 19]</p>

1. 유치원 현황

현재 근무하시는 유치원의 유형 및 규모(학급 수)와 교원 배치 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유형	1) 공립 단설 2) 공립 병설
학급 수	()학급
현원	()명
교원수	1) 보직교사: ()명 2) 담임교사: ()명 3) 비담임교사: ()명
영양(교)사	1) 영양교사 2) 기간제 영양교사 3) 영양사 4) 미배치
보건 인력	1) 보건교사 2) 기간제 보건교사 3) 간호(조무)사 (명칭:) 4) 미배치

2. 현행 배치 인식

- 관리자(원장/원감) 입장에서 보셨을 때, 현재 귀 원의 교직원 규모 및 업무량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보직교사

3. 추가배치교사/전담교사 배치 운영 사례

- 1) 추가배치교사/전담(지원)교사 역할
- 2) 업무 분장 방식/다른 교사와의 관계
- 3) 추가배치교사/업무전담교사로 인해 어떠한 점이 가장 긍정적인가요?
- 4) 추가배치교사/업무전담교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나요?
- 5) 학부모 만족도
- 6) 개선 방향(전면 확대, 축소 등)

4.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배치되고 있는 교사 외에 추가배치교사가 필요한지, 그렇다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영역은 무엇인가요?

- 전담교사는 어떤 기준으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기관규모, 지역적 특성 등)
- 최소 수업시수
- 명칭

5. 영양(교)사/보건 인력

- 현재 귀 원의 영양(교)사 및 보건 인력 배치 현황은 어떠합니까?
- 보건교사·영양교사 배치(또는 미배치)와 관련해 현장에서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현행 제도·기준과 실제 운영 간에 괴리가 있다면 어떤 점이 가장 두드러집니까?
- 유치원의 규모나 유형(단설·병설 등)에 따라 보건교사·영양교사 배치기준은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규 교원(보건·영양교사)을 배치하기 어려운 경우, 어떤 대안(순회, 공동 배치, 외부 지원 등)이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 영양사나 간호사(간호조무사)를 대신 배치하는 경우, 어떤 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6. 교원 배치 표준안에 반드시 반영되었으면 하는 현장 의견은 무엇인가요? 추가로 강조하고 싶은 제안이나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7. 응답자 특성

- 면담 종료 후 아래 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연령	만 ()세
2)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3) 직위	① 원장 ② 원감
4) 총 경력	총 교육 경력: ()년 현 유치원 경력: ()년
5) 유치원 소재지	

***** 면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나. 교사용 심층면담 질문지(전담교사/방과후교사)

유치원 교직원 배치에 관한 현황 및 요구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2025년 수시과제 「유치원 교직원 배치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비담임교사 추가 배치에 관련된 사례 및 건강, 보건 인력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육아정책연구소

※ 본 연구는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직원 배치기준 표준안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의 법령 개정을 참고 하시고, 귀 원의 사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유아교육법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p>제20조(교직원의 구분)</p> <p>①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유치원에는 교원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p> <p>③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교직원의 구분)</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배치기준은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 기관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8.> [시행 2025. 9. 19]</p>

1. 현재 근무하시는 유치원의 유형 및 규모(학급 수), 담당 업무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유형	1) 공립 단설 2) 공립 병설
학급 수	()학급
현원	()명
직위	① 보직교사: ()부장교사 ② 담임교사: ()세반 ③ 비담임교사: ()교사

2. 추가배치교사/전담교사 배치 운영 사례

1) 귀하게서 맡으신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업무
- 수업
- 비중

2) 해당 업무는 어떻게 담당하게 되었습니까? (자원/근무경력에 따른 순서 등)

- 3) 업무 분장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 4) 추가배치교사/업무전담교사로 인해 어떠한 점이 가장 긍정적인가요?
 - 5) 추가배치교사/업무전담교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3.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추가배치교사가 필요한지, 그렇다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영역은 무엇인가요?
- 전담교사는 어떤 기준으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기관규모, 지역적 특성 등)
 - (교사로서의) 최소 수업시수
 - 명칭
4. 교원 배치 표준안에 반드시 반영되었으면 하는 현장 의견은 무엇인가요? 추가로 강조하고 싶은 제안이나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5. 응답자 특성
- 면담 종료 후 아래 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연령	만 ()세
2)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3) 총 경력	총 교육 경력: ()년 현 유치원 경력: ()년
4) 유치원 소재지	()시/도 ()시/군/구

***** 면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 교사용 심층면담 질문지(병설유치원)

유치원 교직원 배치에 관한 현황 및 요구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2025년 수시과제 「유치원 교직원 배치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비답임교사 추가 배치에 관련된 사례 및 건강, 보건, 행정 인력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 본 연구는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직원 배치기준 표준안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의 법령 개정을 참고 하시고, 귀 원의 사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유아교육법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p>제20조(교직원의 구분)</p> <p>①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유치원에는 교원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p> <p>③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교직원의 구분)</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배치기준은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 기관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8.> [시행 2025. 9. 19]</p>

1. 현재 근무하시는 유치원의 유형 및 규모(학급 수), 담당 업무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유형	1) 공립 단설 2) 공립 병설	
학급 수	()학급	
현원	()명	
직위	① 보직교사: ()부장교사 ② 담임교사: ()세반 ③ 비담임교사: ()교사	
교직원 현황	원감: 유 / 무 영양(교)사: 유 / 무	교사: ()명 보건교사/간호사: 유 / 무
	방과후 담당인력 1) 정규교원 ()명 2) 공무직(명칭:) ()명 3) 기간제교원 ()명 4) 기타(명칭:) ()명	

2. 직무

1) 귀하게서 맡으신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업무
- 수업
- 업무 대 수업 비중:

2) 해당 업무는 어떻게 담당하게 되었습니까? (자원/근무경력에 따른 순서 등)

3) 업무 부담 정도는 어떻습니까?

3. 귀 원의 1학급 1담당 배치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떠한 점입니까?

4.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전담교사-비담임, 일정 업무 및 단위활동 수업 담당을 추가배치한다면,

- 전담교사는 어떤 기준으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기관규모, 지역적 특성 등)
- (교사로서의) 최소 수업시수
- 명칭

5. 영양(교)사와 보건인력 배치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인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6. 병설유 초등 겸임 행정직원 배치(교육행정직원)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교육활동, 업무량 증가 등)

7. 교원 배치 표준안에 반드시 반영되었으면 하는 현장 의견은 무엇인가요? 추가로 강조하고 싶은 제안이나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8. 응답자 특성

- 면담 종료 후 아래 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연령	만 ()세
2)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3) 총 경력	총 교육 경력: ()년
	현 유치원 경력: ()년
4) 유치원 소재지	()시/도 ()시/군/구

*****면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유치원 교직원 배치기준 표준안

유치원 교직원 배치기준 표준안

I. 목적

「유아교육법」개정(2025.9.19.)으로 교직원 배치기준 권한이 지도·감독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맞는 유치원 교직원 배치기준을 마련·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참고용 표준안을 마련함. 본 표준안의 교직원 배치기준은 지도·감독기관이 정하는 기준의 예시로, 정원 내에서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음.

II. 추진 배경

- 「유아교육법」 제20조 개정(2025.9.19.)
 -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배치기준은 지도·감독기관이 정함.
- 「유아교육법 시행령」상 유치원 교직원 배치기준 관련 모든 조항 협력 상실

III. 법적 근거

- 「유아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③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배치기준은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 기관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8.〉[시행 2025. 9. 19]

*제18조(지도·감독) ①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IV. 유치원 교원 배치기준

가. 원장: 원장은 유치원별로 1명씩 배치한다.

나. 원감

원감은 유치원별로 1명씩 배치한다. 다만, 2학급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수석교사

수석교사는 유치원별로 1명씩 배치할 수 있으며, 유치원 규모, 지역별 수석교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라. 보직교사

- 1) 유치원에는 원활한 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에서 보직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마련하여 시행한다.
- 2)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교사'로 하며,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분장은 유치원의 장이 정한다.

마. 학급 담당교사

유치원에는 원장·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한다.

바. 방과후 과정 담당교사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 담당교사 외에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할 수 있다.

사. 전담교사

- 1) 유치원에는 교육의 질 향상과 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각 학급 담당교사 외에 전담교사를 둘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지역 여건에 따라 관할청이 마련하여 시행한다.
- 2) 전담교사는 일정 수업과 업무 등을 담당하며, 구체적인 수업과 업무분장은 유치원의 장이 정한다.
- 3) 전담교사는 같은 교육지원청 내 인접한 유치원의 수업을 지원할 수 있다.

아. 순회교사

유치원 교원의 적정한 배치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둘 이상의 인근 유치원을 순회하면서 유아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순회교사 정원 내에서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다.

자. 유아교육진흥원 교사

유아교육진흥원에는 유아의 체험교육, 유아의 정서·심리 상담, 학부모 상담, 유치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교사를 둘 수 있으며, 별도 계획에 의한다. 교사 배치의 세부 기준은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계획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단, 교사의 유아교육진흥원에서의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교원 배치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함.

(관련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9조 별표 1).

차. 영양교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른 영양교사 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영양사를 배치한다.

카. 보건교사

유치원에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배치한다.

V. 유치원 직원 배치기준**가. 행정직원**

유치원에는 행정사무와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원을 둘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관할청에서 마련하여 시행한다. 병설유치원은 병설된 학교의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나. 영양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른 영양교사 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영양사를 배치한다.

다. 간호사

유치원에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배치한다.

VI. 행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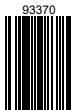
교직원 배치 업무 수행 시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학교급식법」 및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과 각 시도교육청의 관련 조례에 따라 시행하며, 본 표준안을 참고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배치기준을 수립한다.

유치원 교직원 배치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 791168 651210
ISBN 979-11-6865-121-0



93370